

감 사 보 고 서

-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I -

2019. 9.

감 사 원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II. 규제개선 추진체계 및 현황	4
III. 감사결과	9
1. 감사결과 총괄	9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1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 개선 필요(통보)	12
(2)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추진 미흡(주의) ...	24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통보)	34
(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설치자격 개선 필요(통보)	45
(5) 자동차 공매·경매 입고 후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개선 필요(통보) ...	51
(6)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 완화에 기여 [통보(모범)]	59
(7)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 규제 개선효과 미흡(통보)	64
(8) 연안여객선 건조·구입 시 담보대출 제한 완화 필요(통보)	77
(9) 회생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 수납 규정 불합리(통보)	81

(10) 정산업무위탁 회계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주의)	85
(11) 세탁중개점 및 셀프빨래방에 대한 세탁업 규정 적용 불합리(통보)	89
(12)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한 국산화 제품 시범 운용 등 기회 미제공(통보) ...	94
(13) 낙포석탄부두 항만시설 임대료 부과 부적정[주의·통보(시정완료)]	99
(14) 자동차검사 관련 사전 안내문 개선 필요(통보)	103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¹⁾·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민생부담 해소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분야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해소’ 등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 대상자인 기업·국민이 느끼는 규제개선의 실질적 체감도²⁾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지침 등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치되거나 담당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문제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규제 소관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유 등을 확인·점검하여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1)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 2019. 5. 14. 중소기업 용부즈만이 발표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규제개선 정도에 있어 개선되었다는 비율은 29.8%, 악화되었다는 비율은 14.0%, 변화 없음 비율은 50.4%로 나타남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규제 소관 중앙부처에서 접수·관리하고 있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불수용·증장기검토로 회신한 사항을 위주로 규제개선 추진상황의 적정성 및 대안 마련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표 1]과 같이 점검 분야별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점검 분야	감사 중점
기업불편 초래 규제	- 신제품 출시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추진실태 점검 - 원활한 기업활동 저해 및 경영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존치 타당성 검토 - 부당한 재량권 행사, 담당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으로 인한 기업불편 사례 개선 검토
국민 민원 야기 규제	국민 일상생활 관련 각종 규제의 개선 추진 적정성 검토
부담금 관련 규제	기업·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개별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 검토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원에서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실시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 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2018년 10월부터 규제개선 감사를 위한 내부 특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국무조정실·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규제개선 추진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규제개

선 건의기관 및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수집하였다.

또한, 2019. 2. 11.부터 같은 해 4. 2.까지 자료수집을 실시하면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최근 2년간(2017~2018년)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과제를 수집·분석하는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같은 해 4. 22.부터 5. 15.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2명이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업무처리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 5. 15. 서면으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9. 6. 감사위원회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규제개선 추진체계 및 현황³⁾

1. 행정규제의 정의 및 규제개선 추진체계

가. 행정규제의 정의 및 규제의 기본 원칙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표 2]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 행정규제의 범위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사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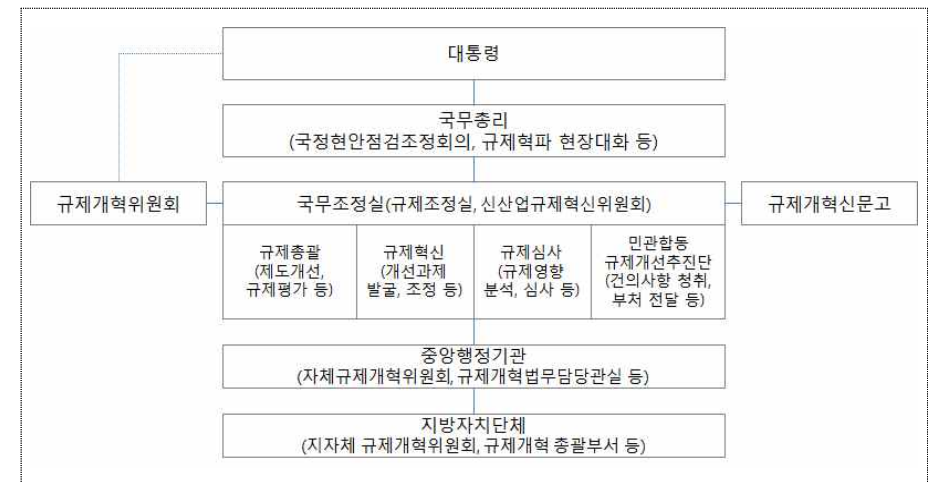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은 규제의 3대 원칙으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할 것,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나. 규제개선 추진체계 및 중점추진 분야

정부는 [그림]과 같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 연도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외부 관련 기관(중소기업 읍무즈만·지방자치단체·각종 규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매년 ‘규제혁신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 규제개선 추진체계도



자료: 2018 규제개혁백서 자료 재구성

또한,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표 3]과 같이 ‘신산업 육성’, ‘기존산업 부담경감’, ‘민생불편·부담 해소’ 등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중점 추진할 규제개선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다.

【표 3】규제개선 중점 추진 핵심분야

신산업 육성	■ 분야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 핀테크·자율주행차·드론·의료·바이오·R&D·콘텐츠 등 핵심 신산업 혁신 ■ 숙박 등 공유경제 확대
기존산업 부담경감	■ 영업 불편 규제개선, 경영 부담 완화, 신규 업종·제품 허용 ■ 관광·금융·스포츠·통신 등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 지역별 산업 활력·공장입지·토지개발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 중기·소상공인 경영·인증·금융·조달 부담 완화 및 차등화
민생불편·부담 해소	■ 주거·교통·출입국·교통 등 분야별 국민 불편사항 해소 ■ 노인·장애인·실업자·환자 등 취약계층 생활 부담 경감 ■ 낙후지역·농어촌 개발 확대, 지역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 권한 이양 ■ 각종 민원·복지수급 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지역 제한 완화

자료: 2019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2. 정부의 규제개선 관련 주요 실적 현황

가. 신설·강화 규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표 4]와 같이 최근 2년간(2017~2018년) 각 부처가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2,177건을 심사하여 88건을 중요규제로 분류하였고,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철화·개선·부대권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로 처리하였다.

【표 4】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단위: 개, 건)

구분	법령 수	심사규제 수	신설·강화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규제	중요규제				
				소계	철화권고	개선권고	부대권고	원안 동의
2017년도	589	1,094	1,060	34	7	9	5	13
2018년도	572	1,083	1,029	54	3	12	14	25
합계	1,161	2,177	2,089	88	10	21	19	38

자료: 2017, 2018 규제개혁백서 자료 재구성

나. 현장 건의과제 개선

2013년 9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표 5]와 같이 최근 2년간(2017~2018년) 규제개선 과제 2,327건을 접수하였고, 그중 일반민원으로 이첩한 655건을 제외한 1,672건을 처리하는 등 출범 이후 총 5,664건의 건의과제를 처리하였다.

【표 5】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실적

(단위: 건)

구분	합계	일반민원 (이첩)	처리결과			
			소계	개선	중장기검토	불수용
2017년도	1,009	237	772	277	91	404
2018년도	1,318	418	900	328	101	471
합계	2,327	655	1,672	605	192	875

자료: 2017, 2018 규제개혁백서 자료 재구성

한편, 2014년 3월 개설된 규제개혁신문고는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건의하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의 창구로서 각 부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2018년도에 [표 6]과 같이 규제건의 총 1,731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개설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18,223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처리하였다.

【표 6】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실적

(단위: 건, %)

구분	규제건의 (비율)	처리결과(비율)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대안 제시	기시행	불수용	중장기 검토
2018년도	1,731 (100)	122 (7.1)	115 (6.6)	4 (0.2)	208 (12.0)	1,224 (70.7)	58 (3.4)

자료: 2018 규제개혁백서 자료 재구성

다. 분야별·주제별 시리즈 규제개선

국무조정실은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를 추진하는 등 [표 7]과 같이 다양한 분야·주제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실적 등을 발표하고 있다.

[표 7] 분야·주제별 규제개선 추진방안 및 실적 발표 현황

연번	일시	제목	주요 내용
1	2018. 4. 6.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 규제 38개 정비
2	2018. 5. 24.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 확대 등 113개 정비과제 발굴
3	2018. 10. 18.	시장 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등 40개 규제개선
4	2018. 10. 24.	창업 규제 혁신 방안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는 등 105개 규제개선
5	2018. 10. 3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신산업 ‘우선 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38개 점검, 65개 전환과제 발굴
6	2018. 11. 15.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	친환경차·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22회의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82개 애로 해소
7	2018. 12. 12.	2018년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등 33개 규제개선
8	2019. 2. 13.	기업건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	첨단업종 범위 조정을 통한 입지 제한 해소 등 74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9	2019. 4. 1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주소지가 아닌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50개 규제개선
10	2019. 4. 1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기술혁신·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등 132개 과제 발굴
11	2019. 5. 16.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사물인터넷·3D 프린팅·신약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36개 애로 해소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8]과 같이 총 22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표 8]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통보 (시정완료)	통보 (모범)
건수	22	8	12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부처 간 규제개선을 위한 협의 미흡으로 기업불편 초래

-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 불분명을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 창업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사후에 전액 환급(3년간 78억여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미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의 후보목록을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확대를 위한 후보 원료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서도 자료 보완요구 등 후속조치 미실시, 규제개선 과제 추진 지연

(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 없이 규제를 계속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이 과다하게 누적(2018년 기준 4.1조 원)되어 있고, 향후 누적액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2023년 5.6조 원)되는데도 2006년에 설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전기요금의 3.7%)을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1971년 최초 지정)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제한 구역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자격을 1994년 규정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여전히 제한, 불법 명의대여의 한 원인으로 작용

(다)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현장에서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

-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자동차 구매·경매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인도일부터 구매·경매 절차 종료일까지 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 9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 행정안전부는 2015년 2월 감정평가법인 외에 개인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였으나, 다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소관 조례 시행규칙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법인으로 여전히 제한

(라)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편·민원 유발

- 한국산업은행은 감정평가 없이 세월호 시설자금을 대출한 데 대하여 국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 2014년 12월 대출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여신지침」을 개정, 내항여객 운송사업자는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산업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
- 한국전력공사는 부실채권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전기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는 기업에도 회생절차를 개시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보증 설정을 요구, 회생절차개시 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건전한 회생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시설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한 기업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데도 임대료를 부과(31억여 원)하였다가 감사원에서 관련 법률 위반 소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법률자문 실시 후 임대료를 반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창업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효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① 중소벤처기업부 ② 농림축산식품부

조 치 기 관 ① 중소벤처기업부 ② 농림축산식품부

내 용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의2 등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공장설치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제38조 등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⁴⁾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4) 사업계획의 승인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는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제도임

승인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일괄 의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농지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6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 쿠목 11)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⁵⁾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사업 초기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부담금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 창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단계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⁵⁾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농지법」 제38조 제4항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전용허가·신고 전까지 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

5) 중소기업 창업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더라도 추후 전액 환급 대상에 해당하여 부담금을 정수할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전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법」 제39조의3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에서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⁶⁾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최근 3년간(2016~2018년) 창업 중소기업이 초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추후에 환급 받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8년도에 경기도 파주시 등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1억여 원을 환급하는 등 [별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내역(2016~2018년)” 및 [표]와 같이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연도별 중복 제외⁷⁾)에서는 260차례에 걸쳐 총 78억여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우선 부과·징수한 다음에 전액 다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후 환급 현황

(단위: 건, 원)

구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급 건수	환급 금액
2016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0개	81	2,966,517,587
2017년도	충청북도 청주시 등 28개	70	1,775,393,470
2018년도	경기도 파주시 등 37개	109	3,114,904,570
합계		260	7,856,815,627

주: 세부 환급 내역은 [별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내역(2016~2018년)” 참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반면에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금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6) 「농지법」 관련 규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으로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창업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7) 3년간(2016~2018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숫자 총합은 95개이나, 연도별 중복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숫자를 제외하면 총 57개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부과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면제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면제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제한 사례>

- (경기도 여주시) 2018. 1. 25. 버섯공급업체 창업 후, 농지전용을 신청한 데 대해 112,606,860원을 사전에 면제하는 등 2018년에 총 5건에 대하여 177,779,61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8. 7. 11. (유)○○산업 창업 후, 농지전용을 신청한 데 대해 146,500,000원을 사전에 면제하는 등 2018년에 총 18건에 대하여 1,163,427,39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이와 같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면제 절차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과 「농지법」 규정 간의 해석이 불분명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를 운영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 비교>

1)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바로 면제하는 경우

- ▶ 사업계획 승인 신청(창업자) ⇒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검토 및 의제사항 협의(지자체)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지자체)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

2)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사전 납부 후 전액 환급하는 경우

- ▶ 사업계획 승인 신청(창업자) ⇒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검토 및 의제사항 협의(지자체)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지자체)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창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신청(창업자) ⇒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환급 결정(지자체)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처리(한국농어촌공사)⁹⁾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창업자가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공장 등을 짓지 못해 농지의 상태에 변화가 없으므로 농지보전을 위해 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고, 창업자가

8) 2016년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면제한 현황은 724건으로 면제 금액은 총 408억여 원(40,878,764,986원)임
 9) 「농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는 관련 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규정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2018. 7. 27.)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 방지 등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협조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를 통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 중소기업의 비용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변하면서도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단계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창업 중소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면제받지 못한 채 일단 납부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환급받음으로써 사업 초기에 자금 마련을 위한 불필요한 부담¹⁰⁾이 되고 있었고, 납부한 부담금을 다시 환급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평균 355.6일¹¹⁾)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

당자들이 사전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등으로 실질적인 부담금 면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절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경우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에 협조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시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0) 최근 3년간(2016~2018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부담금 면제 대상 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창업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11) 2018년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내역을 토대로 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355.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별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내역(2016~2018년)

(단위: 원)

연번	관할청	농지소재지 주소	환급 금액	환급 일자
1	부산광역시 강서구	-	43,050,000	2016. 3. 24.
2	부산광역시 강서구	-	44,350,000	2016. 3. 24.
3	부산광역시 강서구	-	35,250,000	2016. 3. 21.
4	부산광역시 강서구	-	29,800,000	2016. 2. 19.
5	부산광역시 강서구	-	27,450,000	2016. 7. 7.
6	부산광역시 강서구	-	38,300,000	2016. 2. 18.
7	부산광역시 강서구	-	30,600,000	2016. 2. 18.
8	부산광역시 강서구	-	41,750,000	2016. 6. 13.
9	부산광역시 강서구	-	31,050,000	2016. 3. 9.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	17,550,000	2016. 1. 13.
11	부산광역시 강서구	-	23,150,000	2016. 6. 13.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400,000	2016. 8. 8.
13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700,000	2016. 8. 8.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	28,500,000	2016. 10. 4.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	25,540,590	2016. 4. 5.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	76,200,000	2016. 12. 14.
17	부산광역시 기장군	-	139,660,350	2016. 7. 5.
18	부산광역시 기장군	-	46,300,000	2016. 8. 16.
19	대구광역시 동구	-	25,140,080	2016. 1. 26.
20	대구광역시 동구	-	31,437,120	2016. 1. 26.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	31,248,990	2016. 9. 19.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	38,250,000	2016. 10. 12.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	42,950,000	2016. 10. 12.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	42,500,000	2016. 10. 12.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	50,309,670	2016. 7. 18.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	64,110,690	2016. 12. 14.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	26,041,050	2016. 12. 28.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	59,490,000	2016. 1. 6.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	46,069,260	2016. 9. 6.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	90,293,400	2016. 7. 18.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	16,145,460	2016. 5. 31.
32	울산광역시 울주군	-	8,995,800	2016. 5. 31.
33	경기도 용인시	-	91,400,000	2016. 3. 9.
34	경기도 평택시	-	29,980,800	2016. 6. 24.
35	경기도 평택시	-	44,092,800	2016. 6. 13.
36	경기도 화성시	-	121,055	2016. 11. 10.
37	경기도 화성시	-	55,224,784	2016. 11. 10.
38	경기도 화성시	-	32,598,338	2016. 11. 10.
39	경기도 안성시	-	5,019,240	2016. 7. 5.
40	경기도 파주시	-	75,450,000	2016. 7. 19.
41	강원도 춘천시	-	24,453,000	2016. 7. 25.
42	강원도 홍천군	-	3,259,830	2016. 6. 14.

연번	관할청	농지소재지 주소	환급 금액	환급 일자
43	충청북도 청주시	-	27,976,860	2016. 3. 17.
44	충청북도 청주시	-	13,206,000	2016. 3. 16.
45	충청북도 청주시	-	12,460,500	2016. 3. 16.
46	충청북도 청주시	-	13,950	2016. 12. 30.
47	충청북도 청주시	-	938,610	2016. 5. 30.
48	충청북도 청주시	-	7,000,000	2016. 11. 18.
49	충청북도 청주시	-	29,118,540	2016. 9. 28.
50	충청북도 음성군	-	20,260,660	2016. 3. 18.
51	충청북도 음성군	-	6,822,270	2016. 7. 25.
52	충청북도 음성군	-	16,401,000	2016. 11. 16.
53	충청북도 증평군	-	7,565,100	2016. 12. 7.
54	충청남도 천안시	-	4,462,560	2016. 3. 7.
55	충청남도 천안시	-	19,179,600	2016. 3. 25.
56	충청남도 천안시	-	81,205,290	2016. 2. 16.
57	충청남도 천안시	-	70,873,170	2016. 3. 8.
58	충청남도 천안시	-	9,211,200	2016. 11. 14.
59	충청남도 아산시	-	10,555,360	2016. 12. 21.
60	충청남도 아산시	-	25,492,740	2016. 3. 16.
61	충청남도 아산시	-	1,284,360	2016. 11. 25.
62	충청남도 당진시	-	102,398,010	2016. 5. 3.
63	전라북도 전주시	-	17,343,000	2016. 3. 10.
64	전라북도 전주시	-	11,270,490	2016. 1. 19.
65	전라북도 군산시	-	36,621,000	2016. 10. 26.
66	전라북도 완주군	-	17,058,960	2016. 3. 11.
67	전라남도 여수시	-	391,551,890	2016. 5. 24.
68	전라남도 순천시	-	5,510,340	2016. 4. 19.
69	전라남도 장성군	-	6,197,760	2016. 11. 21.
70	경상북도 포항시	-	7,050,060	2016. 8. 23.
71	경상북도 포항시	-	15,452,640	2016. 11. 8.
72	경상북도 고령군	-	5,310,750	2016. 12. 1.
73	경상북도 고령군	-	5,853,870	2016. 10. 17.
74	경상북도 성주군	-	39,768,030	2016. 5. 27.
75	경상남도 창원시	-	13,397,400	2016. 10. 27.
76	경상남도 김해시	-	123,701,100	2016. 7. 6.
77	경상남도 김해시	-	64,748,880	2016. 2. 18.
78	경상남도 김해시	-	26,773,830	2016. 9. 23.
79	경상남도 김해시	-	48,081,900	2016. 10. 7.
80	경상남도 창원군	-	4,166,400	2016. 12. 14.
81	경상남도 창원군	-	7,051,200	2016. 12. 14.
2016년도 소계: 81건(2,966,517,587원)				
82	부산광역시 강서구	-	31,750,000	2017. 8. 29.
83	부산광역시 기장군	-	14,972,670	2017. 9. 22.
84	부산광역시 기장군	-	14,972,670	2017. 9. 22.
85	대구광역시 동구	-	80,950,000	2017. 10. 23.
86	대구광역시 달성군	-	53,900,000	2017. 10. 26.

연번	관할청	농지소재지 주소	환급 금액	환급 일자
87	대구광역시 달성군	-	23,520,000	2017. 3. 8.
88	울산광역시 울주군	-	1,713,150	2017. 9. 12.
89	울산광역시 울주군	-	12,988,440	2017. 6. 21.
90	경기도 평택시	-	41,563,350	2017. 7. 17.
91	경기도 김포시	-	72,209,160	2017. 10. 23.
92	경기도 파주시	-	90,350,000	2017. 12. 12.
93	경기도 파주시	-	26,710,740	2017. 9. 22.
94	강원도 춘천시	-	8,300,000	2017. 6. 27.
95	충청북도 청주시	-	698,250	2017. 2. 6.
96	충청북도 청주시	-	27,679,680	2017. 9. 5.
97	충청북도 청주시	-	15,085,500	2017. 8. 31.
98	충청북도 청주시	-	15,646,230	2017. 11. 15.
99	충청북도 청주시	-	2,452,650	2017. 6. 29.
100	충청북도 청주시	-	23,862,960	2017. 4. 7.
101	충청북도 청주시	-	2,134,470	2017. 6. 27.
102	충청북도 청주시	-	15,736,560	2017. 6. 13.
103	충청북도 청주시	-	47,341,920	2017. 6. 19.
104	충청북도 청주시	-	12,808,320	2017. 11. 20.
105	충청북도 청주시	-	18,671,940	2017. 4. 21.
106	충청북도 청주시	-	10,818,880	2017. 7. 14.
107	충청북도 청주시	-	10,818,890	2017. 7. 14.
108	충청북도 청주시	-	14,075,280	2017. 8. 28.
109	충청북도 청주시	-	22,572,000	2017. 6. 8.
110	충청북도 청주시	-	44,089,500	2017. 6. 16.
111	충청북도 청주시	-	18,578,580	2017. 7. 17.
112	충청북도 청주시	-	72,912,000	2017. 6. 26.
113	충청북도 청주시	-	6,211,350	2017. 11. 13.
114	충청북도 청주시	-	34,056,420	2017. 8. 29.
115	충청북도 청주시	-	45,817,200	2017. 8. 22.
116	충청북도 청주시	-	3,330,000	2017. 10. 24.
117	충청북도 청주시	-	1,032,000	2017. 12. 21.
118	충청북도 청주시	-	12,248,340	2017. 10. 11.
119	충청북도 충주시	-	19,950,300	2017. 10. 31.
120	충청북도 진천군	-	8,268,240	2017. 10. 17.
121	충청북도 진천군	-	5,848,920	2017. 7. 25.
122	충청북도 진천군	-	17,502,480	2017. 6. 28.
123	충청북도 증평군	-	16,465,020	2017. 7. 26.
124	충청남도 아산시	-	7,550,000	2017. 8. 30.
125	충청남도 서산시	-	14,252,040	2017. 2. 27.
126	충청남도 금산군	-	68,160,150	2017. 6. 23.
127	충청남도 금산군	-	32,748,300	2017. 6. 28.
128	충청남도 당진시	-	30,515,580	2017. 8. 29.
129	전라북도 김제시	-	10,202,190	2017. 11. 28.
130	전라남도 순천시	-	7,689,610	2017. 8. 25.
131	전라남도 광양시	-	25,251,000	2017. 11. 10.

연번	관할청	농지소재지 주소	환급 금액	환급 일자
132	전라남도 보성군	-	6,840,210	2017. 10. 17.
133	경상북도 안동시	-	5,596,800	2017. 8. 8.
134	경상북도 고령군	-	4,730,400	2017. 1. 17.
135	경상북도 고령군	-	6,021,480	2017. 1. 17.
136	경상북도 고령군	-	6,318,000	2017. 1. 17.
137	경상북도 고령군	-	5,258,520	2017. 1. 17.
138	경상북도 고령군	-	20,933,010	2017. 5. 4.
139	경상북도 고령군	-	19,437,750	2017. 2. 15.
140	경상북도 고령군	-	14,694,840	2017. 2. 7.
141	경상북도 고령군	-	15,220,590	2017. 6. 21.
142	경상북도 고령군	-	10,624,020	2017. 12. 4.
143	경상북도 고령군	-	10,813,380	2017. 12. 11.
144	경상북도 성주군	-	3,963,900	2017. 6. 21.
145	경상북도 성주군	-	10,745,280	2017. 8. 9.
146	경상북도 성주군	-	5,128,050	2017. 1. 3.
147	경상북도 칠곡군	-	42,468,240	2017. 9. 14.
148	경상남도 진주시	-	8,662,500	2017. 12. 14.
149	경상남도 양산시	-	16,629,430	2017. 7. 3.
150	경상남도 양산시	-	49,834,530	2017. 7. 3.
151	세종특별자치시	-	294,489,610	2017. 12. 22.
2017년도 소계: 70건(1,775,393,470원)				
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	24,500,000	2018. 6. 28.
153	부산광역시 강서구	-	8,050,000	2018. 2. 26.
154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335,000	2018. 6. 8.
155	부산광역시 강서구	-	17,885,000	2018. 2. 13.
156	부산광역시 강서구	-	35,415,500	2018. 3. 19.
157	대구광역시 동구	-	14,900,000	2018. 8. 2.
158	대구광역시 동구	-	26,450,000	2018. 8. 23.
159	대구광역시 달성군	-	37,200,000	2018. 11. 2.
160	대구광역시 달성군	-	21,985,200	2018. 11. 2.
161	대구광역시 달성군	-	3,729,240	2018. 8. 2.
162	대구광역시 달성군	-	60,000,000	2018. 8. 14.
163	대구광역시 달성군	-	29,347,800	2018. 7. 16.
164	울산광역시 울주군	-	9,274,860	2018. 1. 23.
165	경기도 평택시	-	69,468,000	2018. 3. 12.
166	경기도 화성시	-	40,602,490	2018. 7. 23.
167	경기도 화성시	-	50,679,750	2018. 1. 29.
168	경기도 화성시	-	55,454,900	2018. 3. 2.
169	경기도 화성시	-	55,454,900	2018. 3. 2.
170	경기도 화성시	-	55,454,900	2018. 3. 2.
171	경기도 화성시	-	13,148,640	2018. 6. 20.
172	경기도 화성시	-	30,709,830	2018. 6. 1.
173	경기도 화성시	-	4,987,520	2018. 7. 23.
174	경기도 이천시	-	27,732,600	2018. 7. 25.
175	경기도 김포시	-	30,754,680	2018. 5. 10.

연번	관할청	농지소재지 주소	환급 금액	환급 일자
176	경기도 광주시	-	19,650,000	2018. 5. 18.
177	경기도 고양시	-	30,900,000	2018. 6. 20.
178	경기도 남양주시	-	37,389,090	2018. 12. 21.
179	경기도 파주시	-	129,465,000	2018. 7. 17.
180	경기도 파주시	-	130,725,000	2018. 7. 17.
181	경기도 파주시	-	8,050,000	2018. 6. 19.
182	경기도 파주시	-	8,000,000	2018. 6. 19.
183	경기도 파주시	-	8,050,000	2018. 6. 19.
184	경기도 파주시	-	8,150,000	2018. 6. 19.
185	경기도 파주시	-	8,000,000	2018. 6. 19.
186	경기도 파주시	-	8,000,000	2018. 6. 19.
187	경기도 파주시	-	8,000,000	2018. 6. 19.
188	경기도 파주시	-	8,300,000	2018. 6. 19.
189	경기도 파주시	-	88,669,350	2018. 7. 4.
190	경기도 파주시	-	89,923,710	2018. 8. 14.
191	경기도 파주시	-	39,827,970	2018. 12. 19.
192	강원도 춘천시	-	13,824,000	2018. 1. 12.
193	강원도 춘천시	-	35,650,000	2018. 10. 22.
194	강원도 춘천시	-	13,939,200	2018. 7. 25.
195	강원도 원주시	-	11,256,030	2018. 1. 23.
196	강원도 원주시	-	31,350,000	2018. 3. 14.
197	강원도 원주시	-	5,660,400	2018. 7. 26.
198	강원도 원주시	-	12,250,290	2018. 3. 7.
199	강원도 강릉시	-	5,366,790	2018. 2. 22.
200	강원도 횡성군	-	6,016,560	2018. 11. 21.
201	충청북도 청주시	-	10,994,760	2018. 3. 22.
202	충청북도 청주시	-	82,244,210	2018. 6. 5.
203	충청북도 청주시	-	52,311,240	2018. 3. 30.
204	충청북도 청주시	-	8,025,750	2018. 1. 12.
205	충청북도 청주시	-	70,750,710	2018. 11. 22.
206	충청북도 청주시	-	18,857,070	2018. 2. 12.
207	충청북도 청주시	-	18,800,100	2018. 2. 8.
208	충청북도 청주시	-	110,123,100	2018. 11. 15.
209	충청북도 청주시	-	25,107,720	2018. 7. 23.
210	충청북도 청주시	-	12,441,960	2018. 5. 3.
211	충청북도 청주시	-	72,600,000	2018. 5. 4.
212	충청북도 청주시	-	9,370,620	2018. 10. 24.
213	충청북도 청주시	-	6,463,530	2018. 11. 27.
214	충청북도 청주시	-	6,023,970	2018. 10. 12.
215	충청북도 청주시	-	6,812,970	2018. 11. 12.
216	충청북도 청주시	-	22,920,930	2018. 12. 6.
217	충청북도 청주시	-	8,194,560	2018. 7. 23.
218	충청북도 청주시	-	20,571,600	2018. 7. 31.
219	충청북도 청주시	-	65,972,280	2018. 7. 17.
220	충청북도 청주시	-	212,850	2018. 11. 8.

연번	관할청	농지소재지 주소	환급 금액	환급 일자
221	충청북도 청주시	-	3,199,200	2018. 11. 8.
222	충청북도 청주시	-	8,350,000	2018. 8. 28.
223	충청북도 음성군	-	23,344,200	2018. 8. 17.
224	충청남도 천안시	-	2,872,800	2018. 12. 18.
225	충청남도 천안시	-	49,993,160	2018. 7. 27.
226	충청남도 천안시	-	10,849,200	2018. 4. 19.
227	충청남도 천안시	-	93,692,160	2018. 8. 22.
228	충청남도 천안시	-	23,659,650	2018. 11. 28.
229	충청남도 금산군	-	34,164,000	2018. 8. 14.
230	충청남도 금산군	-	14,966,640	2018. 12. 28.
231	전라북도 전주시	-	94,631,040	2018. 5. 21.
232	전라북도 전주시	-	13,784,490	2018. 11. 15.
233	전라북도 전주시	-	33,226,560	2018. 7. 24.
234	전라북도 군산시	-	15,210,000	2018. 7. 10.
235	전라북도 익산시	-	5,415,690	2018. 1. 30.
236	전라북도 익산시	-	30,950,400	2018. 4. 20.
237	전라북도 익산시	-	24,823,500	2018. 10. 10.
238	전라북도 정읍시	-	4,215,900	2018. 1. 29.
239	전라북도 김제시	-	11,117,460	2018. 7. 26.
240	전라북도 완주군	-	15,039,020	2018. 5. 18.
241	전라남도 순천시	-	15,104,340	2018. 6. 19.
242	전라남도 순천시	-	15,705,360	2018. 8. 7.
243	전라남도 순천시	-	12,980,220	2018. 4. 24.
244	전라남도 순천시	-	21,707,400	2018. 11. 21.
245	전라남도 순천시	-	27,813,510	2018. 7. 26.
246	전라남도 고흥군	-	11,900,040	2018. 10. 15.
247	경상북도 포항시	-	41,377,180	2018. 4. 30.
248	경상북도 구미시	-	79,407,750	2018. 10. 23.
249	경상북도 영천시	-	9,274,080	2018. 12. 5.
250	경상북도 경산시	-	5,747,400	2018. 12. 19.
251	경상북도 경산시	-	3,209,520	2018. 1. 8.
252	경상북도 경산시	-	7,351,650	2018. 5. 11.
253	경상북도 고령군	-	885,600	2018. 1. 31.
254	경상북도 고령군	-	5,292,000	2018. 4. 27.
255	경상북도 칠곡군	-	55,292,850	2018. 11. 21.
256	경상북도 칠곡군	-	28,509,000	2018. 4. 12.
257	경상남도 창원시	-	39,620,130	2018. 1. 16.
258	경상남도 김해시	-	17,898,120	2018. 2. 9.
259	경상남도 김해시	-	39,875,720	2018. 12. 27.
260	경상남도 거제시	-	23,713,500	2018. 11. 19.
2018년도 소계: 109건(3,114,904,570원)				
3년간 총계: 260건(7,856,815,627원)				

주: 농지소재지 주소가 같은 환급 내역은 공동명의자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동일인에 대한 별개 허가로 인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추진 미흡

소 관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 치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용

1. 업무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호)을 통해 고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이하 “고시형 원료”¹²⁾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이하 “개별인정형 원료”¹³⁾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2) 2019년 5월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고시형 원료는 총 96종임(비타민 A 등 영양성분 28종, 인삼 등 기능성 원료 68종)

13) 2019년 5월 현재 개별인정형 원료는 총 281종이며, 인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고시형 원료로 등재가 가능함

그런데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가 96종으로 한정(2019년 5월 말 기준)되어 있어 국제 수준¹⁴⁾과 비교할 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기능성 원료로 개별 인정을 받기까지도 시간(2~4년)과 비용(4억 원 이상)이 많이 소요되어 제조·가공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2018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표]와 같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매출액은 2조 2,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5.2%로 나타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고, 무역적자 규모도 미화 4억 1,355만 달러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표] 건강기능식품 판매실적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억 원, %, 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매출액	14,820	16,310	18,230	21,260	22,374
전년 대비 성장률	5.2	10.1	11.8	16.6	5.2
무역수지	△28,304	△35,382	△35,936	△41,203	△41,355
전년 대비 성장률	△8.1	△25.0	△1.6	△14.7	△0.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재구성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비타민에 대한 비중이 높는데 한국 고유의 건강기능식품보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도 외국에서 수요가 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구매·소비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¹⁵⁾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 5. 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분야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4) 기능성 원료·성분 등록 현황은 미국 2,300개, 캐나다 283개, 유럽연합(EU) 1,154개, 일본 127개임

15)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후보 원료 조사 연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농식품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까지 고시형 원료를 확대(약 50종)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개선 세부 추진과제>

- (현행)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성분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사전심의 후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
 - 고시된 원료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에 한계로 작용
 -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에 장기간(2~4년), 고비용(4억 원 이상)이 소요
-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도(원료의 인정 등) 개선
 - ① 고시형 원료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유도
 -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성분으로까지 전문가 검토를 통해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
 - ②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 도입으로 심사 기간 단축(120일 → 60일)
 - ③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위 규제개선 과제 발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전문가 조사¹⁶⁾를 거쳐 기능성·안전성·시장성·국내재배(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예상 원료 및 성분 목록”과 같이 총 54종의 기능성 원료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 10. 12.과 2017. 7.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과)에 2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확대를 위한 후보 원료·성분을 제안하면서 이를 검토하여 향후 고시형 원료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도 2017. 5. 15.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¹⁷⁾을 진행하여 2017. 10. 25.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위 연구에서는 총 66종의 기능성 원료 후보군에 대한 외국의 인정 현황 및 기준·규격 조사, 유통량 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원료 사용실태를 확인하였고, [별표 2] “고시형 원료로 인정되기 위한 원료 후보군의 자료 존재 현황”과 같이 현재 확보한 자료와 보완이 필요한 자료 등을 목록화하면서 시험 및 조사 등의 추가 자료가 보완¹⁸⁾된다면 고시형 원료로 등재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의 국산화 정책을 통한 외화 유출 억제 및 역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연구결과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8. 4. 13. 위 연구용역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과(이하 “●과”로 한다)로 통보¹⁹⁾하였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고시형 원료 등재를 위한 추가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과는 2017. 3. 2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같은 국 소속의 ■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16) 「국내외 기능성 원료 성분 수집조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17)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후보 원료 조사 연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18) 위 연구에 따르면 맥주효모, 생강, 쑥, 아사이베리, 노니, 쿠어세틴 등의 원료는 고시형 원료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로 일부 추가 자료가 보완된다면 고시형 원료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음

19) 위 연구의 과업 기간은 2017. 11. 30.까지이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검토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른 연구과제 결과를 함께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과에는 2018. 4. 13.에 통보

설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고서도 ■과에서 2017. 7. 1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시형 원료 확대 요청 관련 공문을 접수한 후, 해당 내용을 공람하거나 이송하지 않아 규제개선 과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2016년 5월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관련 업무 담당자인 A, B, 과장 C는 2018. 4. 1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보하였는데도 이것이 규제개선 과제 관련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한 채,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등재를 위한 추가 자료 보완요구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과는 감사원에서 2019년 3월경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2019. 4. 1. 농촌진흥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확대를 위한 추가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인 2019. 4. 25.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추가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통보받은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후속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 201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당초 목표한 대로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가 확대되지 못하였고²⁰⁾, 이로 인해 관련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²¹⁾ 달성도 지연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무 이관 후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 고시형 원료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0) 고시형 원료는 2016년 6월과 2018년 2월 각각 7개, 1개가 추가된 데 그쳐 당초 약 50종 확대 목표에 미달

21) 경제적 효과 3,409억 원 및 일자리 창출 750명 예상(2016. 5. 18.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자료)

[별표 1]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예상 원료 및 성분 목록

연번	구분	명칭
1	원료	Agaricus (Agaricus Blazei Murrill)/아가리쿠스버섯
2	원료	맥주효모
3	원료	생강
4	원료	민들레
5	원료	Blueberry/블루베리
6	원료	썩
7	원료	Aronia melanocarpa(Common Name: Chokeberry)/아로니아
8	원료	Momordica charantia(balsam pear)/여주
9	원료	구기자
10	원료	붉은 포도주 추출물
11	원료	Acai(Euterpe Oleracea) Berry/아사이베리
12	원료	로열젤리
13	특정물질	팔라티노스, 차폴리페놀
14	원료	감초
15	원료	당근
16	원료	대두/대두분말/대두추출물
17	원료	밀/밀추출물/밀싹/밀배아유
18	원료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broccoli)/브로콜리
19	원료	Rice Bran Arabinoxylan/아라비노자일란
20	원료	Anthocyanins from elderberry juice/엘더베리 안토시아닌
21	원료	Amla(Phyllanthus Emblica)(Fruit)/인디언 구즈베리
22	원료	Grape Seed/포도씨 추출물
23	특정물질	아미노산
24	특정물질	alpha-linoleic acid/리놀레산
25	원료	Cayenne/고추
26	원료	Morinda Citrifolia/노니
27	원료	Pleurotus ostreatus(oyster mushroom)/느타리버섯
28	원료	Aromatic Solomon's Seal/둥굴레
29	원료	라즈베리 추출물
30	원료	Buckwheat extract containing flavonoid-mineral(troloxerutin-zinc) complex(Coldizin)/메밀추출물
31	원료	석류/석류추출물/석류주스/ellagic acid
32	원료	Brassicaceae(Cruciferae)/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배추
33	원료	잣유
34	특정물질	Rutin Concentrate/루틴
35	특정물질	자일리톨
36	원료	감자

연번	구분	명칭
37	원료	견과
38	원료	Avena Sativa/귀리
39	원료	두충잎 추출물
40	원료	Amaranth/비름
41	원료	Acerola(Malpighia Glabra) Fruit/아세로라
42	원료	African Bush Mango(Irvingia Gabonensis)/아프리카 망고
43	원료	Agaricus Bisporus/양송이버섯
44	원료	연어 어유, 비타민 E
45	원료	올리브유
46	원료	이소플라본, 붉은 클로버 이소플라본 추출물
47	원료	Air Potato/참마
48	원료	Quinoa(Chenopodium quinoa)/퀴노아
49	원료	프룬
50	원료	호밀 식이섬유
51	원료	흰강낭콩 추출물
52	원료	Antarctic Krill Oil/크릴유
53	원료	Brewer's yeast(Saccharomyces cerevisiae)/효모 → 2번 맥주효모와 중복
54	특정물질	쿠어세틴

자료: 「국내외 기능성 원료 성분 수집조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년) 내용 재구성

[별표 2]

고시형 원료로 인정되기 위한 원료 후보군의 자료 존재 현황

연번	원료명	기준 및 규격 자료					안전성 자료							기능성 자료	
		등재된 기능성	원료 사용 부위	제조 방법	지표 (기능성) 성분	유해 물질	섭취 근거	섭취량 평가	독성시험자료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단회 투여	90일 반복 투여	유전 독성 시험	기타 독성 시험			
1	아가리쿠스	○	○	△	△	X	○	○	○	○	○	○	○	X	
2	맥주효모	○	○	△	△	X	○	○	○	○	○	○	○	○	
3	생강	○	○	△	△	X	○	○	○	○	○	○	○	○	
4	민들레	○	○	△	△	X	○	○	X	X	X	X	○	X	
5	블루베리	○	○	△	△	X	○	○	X	X	X	R	○	○	
6	숙	○	○	△	△	X	○	○	○	○	○	○	○	○	
7	아로니아	○	○	△	△	X	○	○	X	X	X	○	○	○	
8	여주	X	○	△	△	X	○	○	X	X	X	○	○	○	
9	구기자	○	○	△	△	X	○	○	X	X	X	X	X	X	
10	붉은 포도주 추출물	○	○	△	△	X	○	X	X	○	○	○	○	X	
11	아사이베리	○	○	△	△	X	○	○	○	○	○	○	○	○	
12	로알젤리	○	○	△	○	X	○	○	X	X	X	X	○	○	
13	팔라티노스/ 차폴리페놀	○	○	△	△	X	○	○	X	○	X	○	○	○	
14	감초	○	○	△	△	X	○	○	X	○	○	X	○	○	
15	당근	○	○	△	△	X	○	○	X	X	X	X	○	○	
16	대두/ 대두분말/ 대두추출물	○	○	△	△	X	○	○	○	X	X	○	X	○	
17	밀/밀추출물/ 밀싹/밀배아유	○	○	△	△	X	○	○	X	○	○	○	○	○	
18	브로콜리	○	○	○	△	X	○	○	X	○	○	○	○	X	
19	아라비노자일란	○	○	△	△	X	○	○	○	X	X	○	○	X	
20	엘더베리 안토시아닌	○	○	△	△	X	○	○	○	X	X	○	○	○	
21	인디언 구즈베리	○	○	△	△	X	○	○	○	X	X	X	○	X	
22	포도씨 추출물	○	○	△	△	X	○	○	X	○	X	○	○	○	
23	아미노산	○	○	△	△	X	○	○	X	○	X	X	○	○	
24	리놀레산	○	○	△	△	X	○	X	X	○	○	X	-	-	
25	고추	○	○	△	△	X	○	○	X	X	○	○	X	○	
26	노니	○	○	△	△	X	○	○	○	○	X	○	○	○	
27	느타리버섯	○	○	△	X	X	○	○	X	X	X	○	○	X	
28	등굴레	○	○	△	△	X	○	○	X	X	X	X	X	X	
29	라즈베리 추출물	○	○	△	○	X	○	○	○	X	X	X	○	○	
30	메밀추출물	○	○	△	△	X	○	○	X	X	○	X	○	X	
31	석류/석류추출물/ 석류주스	○	○	△	△	X	○	○	○	○	○	X	X	○	
32	브로콜리, 클리플라워, 배추	○	X	X	X	X	○	○	○	X	X	X	○	○	
33	젓유	X	○	△	△	X	○	○	X	○	○	X	○	○	

연번	원료명	기준 및 규격 자료					안전성 자료						기능성 자료	
		등재된 기능성	원료 사용 부위	제조 방법	지표 (기능성) 성분	유해 물질	섭취 근거	섭취량 평가	독성시험자료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단회 투여	90일 반복 투여	유전 독성 시험	기타 독성 시험		
34	루틴	○	○	X	△	X	○	○	○	○	○	○	○	○
35	자일리톨	○	X	△	△	X	○	○	X	X	X	○	-	-
36	감자	○	○	△	△	X	○	○	X	○	X	X	○	○
37	브라질너트	○	○	△	△	X	○	○	X	X	X	X	-	-
38	아몬드	○	○	△	△	X	○	○	X	○	○	○	○	X
39	개암/진자	○	○	△	X	X	○	○	X	X	X	X	X	X
40	피칸	○	X	△	X	X	○	○	X	○	X	X	○	○
41	피스타치오	○	○	X	X	X	○	○	○	X	X	○	○	○
42	호두	○	○	△	△	X	○	○	○	X	○	○	○	○
43	마카다미아	○	○	△	X	X	○	○	X	X	X	X	○	X
44	잣	○	○	△	△	X	○	○	X	○	○	X	X	X
45	캐슈	○	○	△	△	X	○	○	○	X	○	○	○	X
46	콜라나무열매	X	○	△	△	X	○	○	○	X	○	○	X	X
47	밤	X	○	△	△	X	○	○	X	X	X	X	○	X
48	땅콩	○	○	△	△	X	○	○	X	X	X	X	○	○
49	은행	○	○	△	△	X	○	○	○	○	○	○	X	X
50	코코넛	○	○	△	△	X	○	○	○	○	○	X	○	X
51	귀리	○	○	△	△	X	○	○	X	X	X	○	○	○
52	두충잎 추출물	○	○	△	△	X	○	○	○	○	○	○	○	X
53	비름	X	○	△	X	X	○	○	X	X	○	○	○	○
54	아세로라	○	○	△	△	X	○	○	○	○	○	○	○	X
55	아프리카 망고	○	○	△	△	X	○	X	X	○	○	X	○	X
56	양송이버섯	X	○	△	△	X	○	○	X	X	X	○	○	○
57	연어 어유, 비타민 E	○	○	△	△	X	○	○	X	X	X	○	○	X
58	올리브유	○	○	△	△	X	○	○	○	X	○	○	○	○
59	이소플라본, 붉은 클로버 이소플라본 추출물	○	○	△	△	X	X	○	○	X	X	X	○	○
60	참마	○	○	△	△	X	○	○	○	X	○	X	○	X
61	퀴노아	○	○	△	△	X	○	○	X	X	X	○	○	X
62	프룬	○	○	△	△	X	○	○	X	X	X	X	○	○
63	호밀 식이섬유	○	○	△	△	X	○	○	X	X	X	X	○	X
64	흰강낭콩 추출물	○	○	△	△	X	○	○	X	X	X	○	○	X
65	크릴유	○	○	△	△	X	○	○	X	○	○	X	○	○
66	쿠어세틴	○	○	△	△	X	○	○	○	○	○	○	○	○

주: ○는 자료 존재, X는 자료 미존재, △는 자료 불충분, R는 문헌 고찰을 의미
 자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후보 원료 조사 연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년) 내용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48조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성 기금²²⁾)을 설치하고, 「전기사업법」 제50조와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3.7%(2001년: 3.13% → 2002~2005년: 4.591% → 2006년 이후: 3.7%)를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금으로 [표 1]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등의 세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전력산업기반기금 주요 세부사업 명세(2019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 구매하여 적정가격을 보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	3,73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주택·건물·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2,670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과 에너지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	2,570

22) 기금은 크게 연금성·금융성·사업성 기금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연금성 기금은 국민연금처럼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각출해 운용하는 형태이고, 금융성 기금은 예·적금처럼 적립식으로 운용하는 형태인 데 비해 사업성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차이가 있음(「매일경제용어사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154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주민에게 소득증대·공공시설설치·주민복지지원·기업유치지원·사회복지·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1,259
기타		6,783
사업비 합계		19,17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표 2]와 같이 사업비·기금운영비(2009년 1조 5,415억 원 → 2018년 1조 8,427억 원, 18.4% 증가)보다 수입(2009년 1조 7,217억 원 → 2018년 3조 3,275억 원, 93.3% 증가)의 증가 폭이 훨씬 커 2009년 1,802억 원이었던 기금 수지가 2018년 1조 4,848억 원으로 8배 넘게 증가하였고, 2009년 2,552억 원이었던 여유재원²³⁾도 2018년 4조 1,848억 원으로 16배 넘게 증가하였다.

[표 2]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지출 현황(2009~2019년)

(단위: 억 원)

구분 ^{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부담금	11,900	13,478	14,710	16,637	18,275	19,471	21,440	20,354	20,396	21,107
	가산금	17	18	19	19	21	22	26	21	20	22
	공공자금관리기금 회수	950	50	700	-	-	-	2,000	3,500	3,600	6,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65	41	46	82	139	180	271	355	423	573
	여유자금 회수	1,973	1,802	3,214	3,036	3,207	5,975	8,976	7,879	8,368	4,122
	여유자금 이자	102	64	109	150	115	224	218	116	86	101
	민간용자 회수	1,179	1,081	1,166	1,435	1,229	1,065	579	642	966	586
	민간용자 이자	232	192	142	99	53	27	15	16	16	19
	기타수입	799	1,208	890	1,522	1,812	3,864	2,461	2,168	2,004	747
소계(A)		17,217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35,051	35,879	33,275
지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B)	15,415	14,720	15,960	17,773	17,376	18,252	19,106	17,683	16,757	18,42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	2,000	2,000	1,500	3,600	9,000	9,000	15,000	14,300
	여유자금 운용(C)	1,802	3,214	3,036	3,207	5,975	8,976	7,880	8,368	4,122	548
	소계	17,217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35,051	35,879	33,275
기금 수지(D=A-B)		1,802	3,214	5,036	5,207	7,475	12,576	16,880	17,368	19,122	14,8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잔액(E)		750	700	2,000	4,000	5,500	9,100	16,100	21,600	33,000	41,300
여유재원(F=C+E)		2,552	3,914	5,036	7,207	11,475	18,076	23,980	29,968	37,122	41,848

주: 2009~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잔액과 여유자금 운용액의 합계액을 말함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전기사업법」에서 부담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부담금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규제이자 준조세로서 강제적으로 국가에 금전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년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²⁴⁾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1위,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1위,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 정도 조사결과 부담 수준이 과도한 부담금 2위로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담금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지출 현황과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유재원이 과도하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준조세인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관련하여 2017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매년 여유재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요율 인하 또는 지출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를 축소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17년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구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전력기반조성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10년, ▷▷학회)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추가 지출을 위한 사업성 기금의 대기 자금으로 기금 채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나 적절한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특성상 적정 여유자금 규모는 지출사업의 10~15%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더욱이 ▽▽회 등 경제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해 달라고 건의²⁵⁾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²⁶⁾의 이행과 전기안전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소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앞서 [표 2]와 같이 여유재원은 2009년 2,552억 원에서 2018년 4조 1,848

24) 전국 중소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출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실태조사

25)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중소기업 읍무즈만을 통해 열처리 업체 등이 산업용 전기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토요 일 경부하 요금을 상시화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면제 또는 요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음

26)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2017년 12월 발표한 계획

억 원으로 16배 이상 누적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의 누적 요인과 향후 전망 및 부담금 요율의 인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의 누적 요인

1) 수입 측면

가) 전력 판매량·단가·수입 증가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

전력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판매 단가도 상승하는 추세여서 전기요금(판매 수입)에 3.7%를 ‘정률’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여유재원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3]과 같이 전력 판매량은 2009년 394.5TWh에서 2018년 526.1TWh로 연평균 3.3% 증가하였고, 판매 단가도 2009년 83.59원/kWh에서 2018년 108.75원/kWh로 연평균 3.0% 증가하여 판매 수입이 2009년 32조 9,750억 원에서 2018년 57조 2,176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하면서 부담금 수입 역시 2009년 1조 1,900억 원에서 2018년 2조 1,107억 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였다.

[표 3] 연도별 전력 판매량·단가·수입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수입 현황(2009~2018년)

(단위: TWh, 원/kWh, 억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력 판매량	394.5	434.2	455.1	466.6	474.8	477.6	483.7	497.0	507.7	526.1
판매 단가	83.59	86.12	89.32	99.10	106.33	111.28	111.57	111.23	109.53	108.75
판매 수입	329,750	373,901	406,471	462,378	504,884	531,441	539,637	552,875	556,140	572,176
부담금 수입	11,900	13,478	14,710	16,637	18,275	19,471	21,440	20,354	20,396	21,107

자료: 한국전력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게다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따르면 [표 4]와 같이 목

표 수요가 2019년 530.4TWh에서 2031년 580.4TWh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부담금 수입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²⁷⁾

[표 4] 목표 수요 전망(2019~2031년)

(단위: TWh)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530.4	540.1	548.9	556.1	561.7	566.2	569.8	572.8	575.2	577.0	578.5	579.5	580.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나) 여유재원 예탁·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발생

여유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예탁·예치기간 동안 이자 수입이 발생함으로써 여유재원 규모가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표 5]와 같이 여유재원이 2013년 1조 1,475억 원에서 2018년 4조 1,848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은 2018년에만 674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 이후에도 이자 수입이 매년 8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5] 연도별 여유재원의 이자 수입 현황 및 전망(2013~2023년)

(단위: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여유재원	11,475	18,076	23,980	29,968	37,122	41,848	52,217	48,446	51,869	52,605	56,923
이자 수입 소계(A+B)	254	404	489	471	509	674	1,089	802	838	867	919
공공자금관리기금 회수	-	-	2,000	3,500	3,600	6,000	8,000	18,000	15,300	7,000	21,740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A)	139	180	271	355	423	573	979	700	760	791	833
여유자금 회수	3,207	5,975	8,976	7,879	8,368	4,122	4,828	5,800	4,406	4,299	4,905
여유자금 이자(B)	115	224	218	116	86	101	110	102	78	76	8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7)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 12. 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으나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평균 인상률이 1.1~1.3%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의 전기요금에 인상되면 부담금 수입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음

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의 용자 회수 및 이자 수입 발생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세 번째로 큰 비중(2019년 13.4%)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은 용자 지출로서 향후 용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용자기간 동안 이자 수입도 발생하고 있어 여유재원 누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1,000억 원 이상 용자자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2019년은 2,570억 원으로 지출금액이 증액되었고, 2020년 이후에도 매년 2,3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나, 2018년에 용자 지출금액 중 586억 원을 회수하는 등 매년 지출된 용자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2018년에 19억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등 매년 용자에 따른 이자도 발생하고 있다.

[표 6]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의 지출·수입 현황 및 전망(2013~2022년)

(단위: 억 원)

구분 ¹⁾	2013년 ²⁾	2014년	2015년	2016년 ³⁾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용자 지출	842	1,284	1,350	1,500	1,080	1,760	2,570	2,300	2,300	2,300
용자 수입	회수	1,229	1,065	579	642	966	409	미정	미정	미정
	이자	53	27	15	16	19	20	미정	미정	미정

주: 1. 2013~2018년은 결산 집행액 기준, 2019~2022년은 계획 기준

2. 2013년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함께 집행하여 특별회계분 642억 원 포함

3. 2016~2017년은 에너지신산업용자사업 포함(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으로 통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2) 지출 측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체 지출²⁸⁾ 가운데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의 지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나머지 금액은 여유재원으로 누적되고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기금 사업비 지출을 확대하여 여유재원을 축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8)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은 크게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구성

그러나 [표 7]과 같이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는 2009년 1조 5,415억 원에서 2018년 1조 8,427억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 전체 지출에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2009년 89.5% → 2018년 55.4%)에 있어 2018년에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로 1조 8,42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조 4,848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었다.

[표 7]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비중(2009~2019년)

(단위: 억 원, %)

구분 ²⁾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지출	17,217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35,051	35,879	33,275	38,168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15,415	14,720	15,960	17,773	17,376	18,252	19,106	17,683	16,757	18,427	19,251
비중	89.5	82.1	76.0	77.3	69.9	59.2	53.1	50.4	46.7	55.4	50.4

주: 2009~2018년은 결산 기준, 2019년은 계획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2019년 19.4%)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이 2011년 12월 종료되어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여유재원이 더욱 누적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²⁹⁾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2011년 12월 이전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지출은 [표 8]과 같이 2017년 4,030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30년에는 사업비 지출이 5억 원으로 크

29)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의 지출 현황 및 전망(2014~2030년)

(단위: 억 원)

2014년 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²⁾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3,360	3,692	4,021	4,030	3,805	3,735	3,735	3,662	3,534	2,376	1,042	405	14	12	12	10	5

주: 1. 2014~2018년은 결산 집행액 기준
2. 2019년부터 전력거래가격 87.23원/kWh를 적용한 전망치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

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누적 전망 및 부담금 효율 인하 가능성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3년까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지출을 전망한 결과, 부담금 효율을 현재 3.7%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추가 여부에 따라 일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표 9]와 같이 수입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기금 수지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여유재원도 2019년 5조 2,217억 원에 비해 2023년에는 4,706억 원 늘어난 5조 6,9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지출 전망(2019~2023년)

(단위: 억 원)

구분 ¹⁾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	부담금	21,830	21,886	22,245	22,536	22,764
	공공자금관리기금 회수	8,000	18,000	15,300	7,000	21,740
	여유자금 회수	4,828	5,800	4,406	4,299	4,905
	기타	3,510	2,471	2,639	2,691	2,965
	소계(A)	38,168	48,157	44,590	36,526	52,374
지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B)	19,251	22,011	21,461	24,491	21,4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7,000	21,740	18,830	7,130	26,680
	여유자금 운용(C)	11,917	4,406	4,299	4,905	4,283
	소계	38,168	48,157	44,590	36,526	52,374
기금 수지(D=A-B)		18,917	26,146	23,129	12,035	30,96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잔액(E)		40,300	44,040	47,570	47,700	52,640
여유재원(F=C+E) ²⁾		52,217	48,446	51,869	52,605	56,923

주: 1. “2019~2023년 전력기금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나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수입, 지출 전망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2. 신규사업이 추가될 경우 여유재원이 감소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효율 인하 가능성과 인하에 따른 여유재원을 전망한 결과, 예를 들어 [표 10]과 같이 부담금 효율을 0.2%p 인하(부담금 효율 3.5%)할 경우에는 2020년 부담금 수입이 2조 1,886억 원에서 2조 703억 원으로 감소하여 국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1,183억 원가량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부담금 효율을 0.2%p 인하(부담금 효율 3.5%)할 경우 신규사업의 추가 여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기금 수지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여유재원 누적액도 매년 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나 기금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효율을 조정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0] 효율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수입·기금 수지·여유재원 전망(2019~2023년)

(단위: %, 억 원)

부담금 효율에 따른 부담금 수입·기금 수지·여유재원 ¹⁾ 2)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7	부담금 수입	21,830	21,886	22,245	22,536	22,764
	기금 수지	18,917	26,146	23,129	12,035	30,963
	여유재원	52,217	48,446	51,869	52,605	56,923
3.5	부담금 수입	20,650	20,703	21,042	21,318	21,533
	기금 수지	17,737	24,963	21,926	10,817	29,732
	여유재원	51,037	47,263	50,666	51,387	55,692
3.3	부담금 수입	19,470	19,520	19,840	20,100	20,303
	기금 수지	16,557	23,780	20,724	9,599	28,502
	여유재원	49,857	46,080	49,464	50,169	54,462
3.1	부담금 수입	18,290	18,337	18,637	18,882	19,072
	기금 수지	15,377	22,597	19,521	8,381	27,271
	여유재원	48,677	44,897	48,261	48,951	53,231
2.9	부담금 수입	17,110	17,154	17,435	17,663	17,842
	기금 수지	14,197	21,414	18,319	7,162	26,041
	여유재원	47,497	43,714	47,059	47,732	52,001
2.7	부담금 수입	15,930	15,971	16,233	16,445	16,611
	기금 수지	13,017	20,231	17,117	5,944	24,810
	여유재원	46,317	42,531	45,857	46,514	50,770

주: 1. “2019~2023년 전력기금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나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부담금 효율 인하 폭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주: 2. 신규사업이 추가될 경우 여유재원이 감소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이상 “가항”과 “나항”을 고려할 때,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는 연평균 2.0% 증가한 반면에 부담금 수입은 연평균 6.6% 증가하는 등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보다 수입이 과다하여 여유재원이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효율을 인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효율 인하는 기금의 수입 전망과 지출사업의 중장기 투자 소요 전망을 토대로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효율 인하 및 합리적 운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효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설치자격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주유소 등”이라 한다)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행위허가일 현재까지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이라 한다) 제5호 마목 10)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정 당시 거주자’가 신규로 주유소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 최초 지정된 후 4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 당시 거주자’ 현황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실제 주유소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명의대여 등이 없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유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 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5년 이상 거주자’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당초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이후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 수에 비해 준공·운영 실적이 저조³⁰⁾하게 나타남에 따라 2018. 12. 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는 등 설치자격을 완화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30) 경기도의 경우 2018. 1. 1.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수는 각각 63개이나 실제로 야영장은 10개, 실외체육시설은 5개만 준공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 등으로 1994. 1. 1.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의 설치자격을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1995. 3. 14. 건설교통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더목에 따른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³¹⁾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경기도의 ‘지정 당시 거주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가장 넓은데도 불구하고(2019. 1. 1. 기준 1,167km²), [표 1]과 같이 2017년 기준 ‘지정 당시 거주자’는 용인·과천시 각각 0명, 부천시 1명, 군포·안양시 각각 3명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정 당시 거주자’는 100명 미만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사망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지정 당시 거주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기도의 ‘지정 당시 거주자’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지자체명	지정 당시 거주자	지자체명	지정 당시 거주자	지자체명	지정 당시 거주자	지자체명	지정 당시 거주자
수원시	42	시흥시	16	김포시	1,081	고양시	2,790
성남시	34	화성시	56	하남시	9,868	남양주시	806
부천시	1	광명시	17	의왕시	243	의정부시	35
용인시	0	군포시	3	양평군	70	구리시	13
안산시	181	광주시	362	과천시	0	양주시	428
안양시	3	합계		16,049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갖춘 ‘지정 당시 거주자’라 하더라도 농림업·축산업·음식점업 등 다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주유소 등의 설치에는 설비

31)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2000. 6. 28.부터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더목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

투자가 수반되어 실제로 주유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이보다 더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표 2]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은 2014년 537개소에서 2018년 564개소로 증가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계획에 따르면 ‘화성 자안~분천 지방도 322호선 확·포장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신설공사나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3월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게만 허용되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대한 일반인의 구매를 허용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는 2018년 204만 대에서 2030년 282만 대로 3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신규 설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표 2] 최근 5년간(2014~2018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유소	384	383	387	394	403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153	160	163	161	161
계	537	543	550	555	564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등록·허가를 받은 ‘지정 당시 거주자’가 실제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의변경 현황(이후 취소된 경우 포함)을 조사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기 시작한 1994년 한 해 동안 등록·허가된 150개소의 경우 2개소(1.3%)만 등록·허가 후 1년 이내에 명의가 변경된 반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주유소’는 2013. 5. 16. 등록하자마자 당일 명의변경되는 등 [표 3]과 같이 최근 10년간(2010~2019년) 등록·

허가된 118개소 가운데 53개소(44.9%)는 등록·허가 후 1년 이내에 명의가 변경되었다.

[표 3] 최근 10년간(2010~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최초 명의변경 현황

(단위: 개소)

총계 ^{주)}	1년 이내							1년 후	미변경
	1개월 이내	1개월 후~2개월 이내	2개월 후~3개월 이내	3개월 후~6개월 이내	6개월 후~9개월 이내	9개월 후~12개월 이내	소계		
118	21	6	2	5	8	11	53	37	28

주: 주유소 등 설치 당시 개발제한구역 기준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최근 10년간 등록·허가된 118개소 가운데 [표 4]와 같이 ‘지정 당시 거주자’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나 등록·허가를 취소³²⁾한 경우가 10개소로 나타났고,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관련자 간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표 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명의대여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현황

연번	지자체명	상호	최초 등록·허가일	최초명의 변경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현황
1	김포시	-	2013. 7. 1.	-	개발행위허가 취소(2016. 8. 16.) 충전사업허가 취소(2016. 9. 28.)
2	김포시	♡♡주유소	2012. 11. 30.	-	개발행위허가 취소(2016. 9. 21.)
3	김포시	-	2012. 8. 24.	2013. 10. 28.	개발행위허가 취소(2018. 6. 12.)
4	김포시	-	2012. 9. 21.	2014. 12. 26.	개발행위허가 취소(2018. 6. 12.)
5	김포시	-	2015. 9. 21.	2016. 4. 28.	개발행위허가 취소(2018. 7. 27.)
6	김포시	-	2015. 4. 13.	2016. 5. 9.	개발행위허가 취소(2018. 8. 10.)
7	하남시	-	2011. 6. 15.	2012. 5. 14.	개발행위허가 취소(2017. 11. 20.) 충전사업허가 취소(2018. 5. 8.)
8	하남시	-	2015. 4. 17.	2016. 3. 25.	개발행위허가 취소(2017. 7. 10.) 충전사업허가 취소(2017. 9. 29.)
9	하남시	-	2015. 9. 3.	-	개발행위허가 취소(2017. 7. 10.) 충전사업허가 취소(2017. 9. 12.)
10	화성시	-	2013. 3. 4.	-	개발행위허가 취소(2015. 7. 1.) 충전사업허가 취소(2015. 7. 1.)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3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업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가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관련 금품수수 사례>

- ▶ 2012년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유소”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D는 ‘지정 당시 거주자’인 E의 명의를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E에게 2억 원을 지급,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기소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4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지정 당시 거주자’의 감소로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대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주유소 등의 등록·허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명성·공정성이 훼손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기존 도로 또는 신규 도로에 주유소 등의 설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설치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자격과 관련하여 현재 ‘지정 당시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는 설치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자동차 공매·경매 입고 후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³³⁾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및 제48조 등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등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

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함

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매·경매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2월 이전까지는 공매·경매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한 후에 공매·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으나,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매 기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1. 3. 2014과1938 결정) 등을 근거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8. 2. 23. 경상북도로부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공매·경매절차에 따라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개선 건의를 받고 이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공매 진행 기간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공매·경매절차가 종료된 때에 자동차 인도일부터 공매·경매절차 종료일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회신하거나 자동차 관리 담당자 실무교육(2018. 4. 9.~4. 27.)을 실시하면서는 자동차가 강제집행되고 그 절차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차 공매·경매 기간에 대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고, 2019년 1월에도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를 위한 “전산처리 방법 및 실무사례”를 배포하면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공매·경매절차 종료 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교육, 실무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하고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는 여전히 공매·경매 기간 중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2018. 5. 24.과 2019. 2. 25.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이 국토교통부에 각각 같은 내용을 질의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매·경매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공매·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공매·경매절차 종료일까지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과태료 면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 공매·경매 기간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면제 가능하다는 사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동안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 관할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의무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와 같이 충청남도 천안시 등 95개(41.7%)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면제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사유로 공매절차 진행 중에도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응답한 반면, 충청북도 청주시 등 89개(39.0%) 지방자치단체는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자동차의 공매절차 진행 기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단위: 만 원, 개, %)

의무보험 가입 유지			의무보험 가입 면제			기타 ^{주)} (비율)	합계
자치단체 수 (비율)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치단체 수(비율)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소계	2018년 2월 이전부터 면제	2018년 2월 이후부터 면제		
95 (41.7)	642 (2억 3,711만 원)	283 (7,354만 원)	89 (39.0)	49 (21.5)	40 (17.5)	44 (19.3)	228 (100)

주: 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공매절차를 진행 중인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자동차의 공매 차량 입고 후, 과태료 부과·면제 사례>

-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차량 소유주가 2018. 9. 6.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9. 7.) 공매절차에 따라 집행관에 자동차를 인도하고 공매절차 종료 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자, 미가입 일수 216일에 대해 과태료 900,000원을 부과하는 등 최근 3년간(2016~2018년) 45건의 과태료(2,400만 원)를 부과하였음
- (과태료 면제) 충청북도 청주시는 ■■차량 소유주가 2018. 4. 20. 공매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같은 해 5. 12.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등 최근 3년간(2016~2018년) 22건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였음

그리고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위 89개 지방자치단체 중 49개 지

방자치단체(55.1%)는 2018년 2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개 지방자치단체(44.9%)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이후에 질의회신·실무교육 등을 통해 자동차의 공매절차 진행 중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이전부터 공매절차 진행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49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과태료 면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충청북도 청주시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공매 기간 중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22건에 대해 모두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는 등 [별표]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의 공매 기간 중 과태료 면제 및 부과 현황”과 같이 12개 지방자치단체는 공매 기간 중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총 236건에 대해 과태료를 모두 면제한 반면, 나머지 37개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를 일부만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등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실제로는 제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공매·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 이후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 서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혼선을 빚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 업무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공매·경매절차에 따라 집행관에게 자동차가 인도된 후 공매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공매·경매절차 종료일까지 과태료 부과일수에
 서 제외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매·경매절차로 인해 자동차를 집행관에
 게 인도한 경우에 인도일로부터 공매·경매절차 종료일까지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5]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지방자치단체별^{주)} 자동차의 공매 기간 중 과태료 면제 및 부과 현황

(단위: 원, 건, %)

구분	광역	기초	입고 후 과태료	공매 입고 후 의무보험 미가입			면제 비율
				계	부과	미부과	
1	대구광역시	수성구	-	3	0	3	100.0
2	대구광역시	달서구	-	57	0	57	100.0
3	대전광역시	대덕구	-	15	0	15	100.0
4	경기도	광명시	-	13	0	13	100.0
5	충청북도	청주시	-	22	0	22	100.0
6	전라북도	완주군	-	18	0	18	100.0
7	경상북도	경산시	-	27	0	27	100.0
8	경상북도	구미시	-	28	0	28	100.0
9	경상북도	포항시	-	41	0	41	100.0
10	경상남도	창원시(진해)	-	5	0	5	100.0
11	경상남도	창원시(창원)	-	5	0	5	100.0
12	경상남도	함안군	-	2	0	2	100.0
소계			-	236	0	236	100.0
13	경기도	포천시	560,550	36	1	35	97.2
14	경상북도	성주군	2,301,000	23	6	17	73.9
15	충청북도	제천시	555,000	10	3	7	70.0
16	경기도	부천시	10,662,000	90	33	57	63.3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970,000	36	14	22	61.1
18	경상남도	창원시(마산)	1,116,000	5	2	3	60.0
19	부산광역시	금정구	658,900	10	4	6	60.0
20	충청남도	서산시	1,017,000	12	5	7	58.3
21	대구광역시	북구	5,013,000	37	18	19	51.4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3,978,000	10	5	5	50.0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6,882,000	25	13	12	48.0
24	경상북도	칠곡군	3,831,000	23	12	11	47.8
25	경기도	안양시	11,676,000	50	28	22	44.0
26	경기도	성남시	7,863,000	53	32	21	39.6
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900,000	8	5	3	37.5
28	충청남도	홍성군	1,490,000	10	7	3	30.0
29	대구광역시	남구	8,307,000	35	26	9	25.7
30	경상북도	영주시	2,973,000	16	12	4	25.0
31	경상북도	김천시	2,735,230	13	10	3	23.1
32	전라북도	군산시	3,252,000	13	10	3	23.1
33	부산광역시	연제구	3,036,000	14	11	3	21.4

구분	광역시	기초	입고 후 과태료	공매 입고 후 의무보험 미가입			면제 비율
				계	부과	미부과	
34	인천광역시	부평구	4,386,000	11	9	2	18.2
35	경상북도	경주시	5,278,200	21	18	3	14.3
36	대구광역시	중구	4,359,720	14	12	2	14.3
37	경기도	파주시	5,096,750	25	22	3	12.0
38	경상남도	김해시	5,329,070	31	28	3	9.7
39	경기도	양주시	2,701,000	14	13	1	7.1
40	경상남도	양산시	3,195,160	14	13	1	7.1
41	경기도	평택시	6,030,000	28	27	1	3.6
42	경상남도	사천시	1,515,000	10	10	0	0.0
43	서울특별시	성북구	3,309,000	11	11	0	0.0
44	서울특별시	송파구	357,000	1	1	0	0.0
45	전라남도	신안군	249,000	3	3	0	0.0
46	전라남도	여수시	4,180,590	13	13	0	0.0
47	충청남도	서천군	2,090,000	8	8	0	0.0
48	충청남도	예산군	216,000	1	1	0	0.0
49	충청남도	태안군	15,000	1	1	0	0.0
소계			129,084,170	735	447	288	39.2
합계			129,084,170	971	447	524	54.0

주: 2018년 2월 이전부터 공매절차 진행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 완화에 기여

소 관 기 관 양주시

조 치 기 관 양주시

모 범 부 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모 범 내 용

양주시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이하 “위 부서”라 한다)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나 기업 등 지역 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 10. 24.과 같은 해 10. 28. 양주시 관내에 일반산업단지 조성³⁴⁾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G)는 기존에 분할되어 있던 지번을 새로운 지번으로 합병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과다³⁵⁾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건의서를 위 부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구 「부동산등기규칙」(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새로운 토지에 관한

34) ㄱ산업단지(시행자: ▲▲주식회사), ㄴ산업단지(시행자: 주식회사 ▼▼)

35) ▲▲주식회사의 경우 약 5억 원, 주식회사 ▼▼의 경우 약 4억 원의 비용 발생을 주장함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등기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채권자의 양해를 받아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하였다가 새로운 등기를 생성한 다음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여러 개의 지번이 하나의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되었을 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에 재설정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³⁶⁾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보험 수수료까지 부담하여야 하자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양주시에 요청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3. 10. 29. 위 부서는 근저당권 말소 후에 재설정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건축물 준공처리도 할 수 없어 등기 설정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행정처리 및 기업의 생산활동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존 토지 소유권자와 소유권 외 근저당권 설정번호 및 설정일이 동일하면 신규 조성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하였다.

36)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채권최고액의 1%),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등기 수수료(부동산마다 15,000원) 및 법무사 업무 대행 비용 등

그런데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는 “토지개발사업 완료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에 그 다른 등기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위 부서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부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표]와 같이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동일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하는 등으로 적극 노력하였다.

[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신청요건 개선 관련 건의 사례

대상	건의 일자	건의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2013. 12. 6.	-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생성 행정절차 간소화 - 기존 근저당권 등 권리를 말소하고 재설정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 불편사항 해소 요청
경기도	2014. 2. 11.	
경기도·국무조정실	2014. 4. 3.	

자료: 양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위 부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등 근저당권자를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해당 토지 위의 공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남겨두었다가³⁷⁾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해당 기업은 보증보험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³⁸⁾

또한, 2016. 5. 11. 양주시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조합(대표자 H)으로부터 앞선 내용과 유사한 기업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출받게 되었다.

37) 당초 근저당권은 토지와 토지 위 건물 모두에 설정되어 있었음

38)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과정이 2014. 12. 9. KBS에서 소개된 바 있음

그러나 ◆◆조합의 경우에는 위의 두 사례와 달리 해당 토지에 공장 건물이 없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 부서는 기업불편 해결방안을 모색하다가 2018. 2. 22. 경기도가 같은 해 3. 29. 주최할 예정이던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간담회’의 발굴과제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간소화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22.에는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행정처리 지연 등 당시 등기요건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규정 개정을 재차 건의하였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을 통해 위 부서의 규정 개정 건의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2018년 4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겠다”며 기존의 불수용 의견을 일부 수용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4.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를 수반하지 않고 지적공부가 새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서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등기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위 부서는 기업불편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시 기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폐지되는 등 등기신청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근저당권 재설정 관련 비용³⁹⁾을 절감⁴⁰⁾하였으며,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9)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미발생,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 절감
40)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에 따른 근저당권 재설정 비용 비교

조 치 사 항 위 부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구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제정 전	채권최고액의 1%	채권최고액의 0.2%	등록면허세액의 20%	부동산마다 1만 5천 원
제정 후	면제	부동산마다 6천 원	변동 없음	변동 없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 규제 개선효과 미흡

소 관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교육부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2015. 2.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시가(時價)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기존에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하도록 한 것을 감정평가업자⁴¹⁾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5. 2. 16.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감정평가법인만을 공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 등은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2014. 4. 28. 규제개혁신문고에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차별하는 불공정 법령에 대한 개정을 청원하였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위 건의사항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2015. 2. 16.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시행⁴²⁾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2015. 3. 2.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개정 내용의 시

4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란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42) 기획재정부도 2016. 7. 1. 규제 관련 시행령을 일괄 정비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였고, 교육부도 2015. 3. 3. 각 시·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감정평가사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이행·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규칙상 위 규제개선 사항의 반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9년 4월 말까지도 [별표 1] “조례 시행규칙상 규제개선 사항의 반영 현황” 및 [표 1]과 같이 경기도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1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조례 시행규칙에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었다.

[표 1]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사항 반영 현황

구분	해당 지자체(비율)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체	규제개선 사항 반영 여부
광역	서울특별시 등 11개 (64.7%)	감정평가업자 또는 별도 명시 없음	반영
	경기도 등 6개 (35.3%)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기초	경기도 가평군 등 98개 (43.4%)	감정평가업자 또는 별도 명시 없음	반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128개 (56.6%)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주: 2019년 4월 말 기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별 세부 명세는 [별표 1] 참조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재구성

<조례 시행규칙상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 조항 예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경기도규칙 제3805호, 2018. 8. 1. 일부개정)

- 제16조(가액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 법령 개정사항 미인지 등을 이유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 예시>

- (대구광역시) 내부방침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 조문 개정은 누락
- (경기도)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하는지 미인지
- (충청북도)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규제개선 사항이 미반영
- (전라남도) 20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시 토석 채취료 시가 적용 및 공유토지의 분할 시 토지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으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누락
- (경상북도)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반영 누락

그런데 규제 소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19년 1월부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를 추진하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규칙 등에 위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9. 4. 29. 위 규제개선 사항이 포함된 개정 추진 협조 공문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발송하였다.

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상 위 규제개선 사항의 반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4년여

가 지난 2019년 4월 말까지도 [별표 2]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상 규제개선 사항의 반영 현황” 및 [표 2]와 같이 강원도교육청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에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었다.

[표 2] 시·도교육청의 규제개선 사항 반영 현황

구분	해당 기관(비율)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체	규제개선 사항 반영 여부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5개 (29.4%)	감정평가업자	반영
	강원도교육청 등 12개 (70.6%)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주: 2019년 4월 말 기준, 시·도교육청별 세부 명세는 [별표 2] 참조
자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상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 조항 예시>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강원도교육규칙 제798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21조(가액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액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액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이나 그 밖에 가액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업무 담당자의 착오, 반영 필요성에 대한 세부 검토 미실시, 단순 누락 등을 이유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교육청의 규제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 예시>

- (대구광역시교육청) 담당자의 업무 착오에 따라 미반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규칙 반영 필요성에 대한 세부 검토 미실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업무 착오로 누락되어 미반영
- (강원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시 단순 누락에 따라 미반영
- (전라북도교육청)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점을 미인지

그런데 교육부는 위 규제개선 사항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난 2019년 4월 현재 시점까지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이행상황 등을 지도·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가”항 및 “나”항과 같이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기존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내용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 등에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규제개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조례 정비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개정해야 할 불합리한 조례 규정(감정평가 진입 규제사항 포함)을 통보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조례 정비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 등이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독려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개

선한 사항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교육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 사항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조례 시행규칙상 규제개선 사항의 반영 현황

연번	구분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제	반영 여부	비고
	광역	기초			
1	서울특별시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0. 22. 개정
2		강동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2. 30. 개정
3		강북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1. 20. 개정
4		관악구	별도 명시 없음	-	-
5		광진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7. 21. 개정
6		구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7		금천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4. 26. 개정
8		노원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		도봉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3. 10. 개정
10		동대문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		마포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1. 26. 개정
12		서대문구	공인 감정기관	-	-
13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		성동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		성북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6		송파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0. 22. 개정
17		양천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6. 28. 개정
18		영등포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		용산구	감정평가자	반영	2015. 11. 13. 개정
20		은평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6. 개정
21		종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2		중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		강남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18. 개정
24		강서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12. 13. 개정
25		동작구	별도 명시 없음	-	-
26		종랑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12. 31. 개정
27	부산광역시	본청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28		중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29		서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30		동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5. 16. 개정
31		영도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3. 9. 개정
32		부산진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33		동래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34		남구	별도 명시 없음	-	-
35		북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36		해운대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37		사하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38		금정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39		강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40		연제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41		수영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2. 28. 개정
42		사상구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43		기장군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44	대구광역시	본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45		중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46		동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47		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48		남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0. 10. 개정
49		북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0		수성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1		달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2		달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연번	구분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제	반영 여부	비고
	광역	기초			
53	인천광역시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19. 개정
54		중구	감정평가사	반영	2017. 11. 13. 개정
55		동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6		미추홀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7		연수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16. 개정
58		남동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9		부평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0		계양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8. 10. 개정
61		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2		강화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3	광주광역시	웅진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4		본청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65		동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6		서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7		남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9. 1. 18. 개정
68		북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9		광산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70	대전광역시	본청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71		동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2. 17. 개정
72		중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73		서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7. 6. 개정
74		유성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27. 개정
75	울산광역시	대덕구	별도 명시 없음	-	2018. 8. 17. 개정
76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8. 개정
77		중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7. 11. 개정
78		남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1. 5. 개정
79		북구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0		동구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3. 개정
81		울주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3		본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4	경기도	가평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7. 개정
85		과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6		광명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7		광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8		고양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9		구리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0		군포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1		김포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2		남양주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6. 9. 개정
93		동두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4	충청북도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9. 12. 개정
95		성남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6		수원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1. 13. 개정
97		시흥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8		안산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9		안성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00		양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01		양평군	별도 명시 없음	-	-
102		여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03		연천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21. 개정
104	충청남도	오산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05		용인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9. 10. 개정
106		의왕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연번	구분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제	반영 여부	비고
	광역	기초			
107	경기도	의정부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9. 5. 개정
108		이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09		파주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23. 개정
110		평택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1		포천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7. 25. 개정
112		화성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3		안양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4		하남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5	강원도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4. 개정
116		춘천시	별도 명시 없음	-	-
117		원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8		강릉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9		동해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8. 24. 개정
120		태백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6. 23. 개정
121		속초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21. 개정
122		삼척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123		홍천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9. 28. 개정
124		횡성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2. 24. 개정
125	충청남도	영월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126		평창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27		정선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28		철원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29		화천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0		양구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8. 10. 17. 개정
131		인제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2		고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3		양양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4		본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5	충청북도	청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6		충주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9. 개정
137		제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8		보은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9		옥천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8. 13. 개정
140		영동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7. 1. 개정
141		증평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2		진천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3		괴산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4		음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5	충청남도	단양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4. 7. 개정
146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0. 20. 개정
147		천안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9. 12. 개정
148		공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9		보령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0		아산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1		서산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2		논산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	반영	2016. 3. 30. 개정
153		계룡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8. 1. 개정
154		당진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5	충청남도	금산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6		부여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7		서천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8		청양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1. 개정
159		홍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60		예산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61		태안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9. 개정

연번	구분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제	반영 여부	비고
	광역	기초			
162	전라북도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163		전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64		군산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65		익산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4. 28. 개정
166		정읍시	감정평가기관 또는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2. 26. 개정
167		남원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9. 개정
168		김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69		완주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0. 13. 개정
170		진안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171		무주군	별도 명시 없음	-	별지 서식에 법인 명시
172		장수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73		임실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174		순창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75		고창군	감정원	미반영	-
176		부안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77	전라남도	본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78		목포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79		여수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0		순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1		나주시	감정원	미반영	-
182		광양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3		담양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4		곡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5		구례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0. 31. 개정
186		고흥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7		보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8		화순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89		장흥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0		강진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1		해남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192		영암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3		무안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4		함평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5		영광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6		장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7		완도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8		진도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99		신안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00	경상북도	본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01		포항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02		경주시	감정원	미반영	-
203		김천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9. 29. 개정
204		안동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205		구미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06		영주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7. 25. 개정
207		영천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08		상주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7. 11. 개정
209		문경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10		경산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6. 13. 개정
211		군위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30. 개정
212		의성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28. 개정
213		청송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14		영양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15		영덕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16		청도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연번	구분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제	반영 여부	비고
	광역	기초			
217	경상북도	고령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18		성주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10. 개정
219		칠곡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8. 8. 개정
220		예천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28. 개정
221		봉화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22		울진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28. 개정
223		울릉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24	경상남도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0. 29. 개정
225		창원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2. 28. 개정
226		진주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27		통영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7. 6. 개정
228		사천시	별도 명시 없음	-	-
229		김해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0		밀양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2. 24. 개정
231		거제시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1. 29. 개정
232		양산시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3		의령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4		함안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5		창녕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6		고성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7		남해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9. 23. 개정
238		하동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39		산청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40		함양군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241		거창군	별도 명시 없음	-	-
242	제주특별자치도	합천군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12. 1. 개정
243		본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7. 8. 23. 개정

주: 2019년 4월 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별표 2]

시·도교육청 조례 시행규칙상 규제개선 사항의 반영 현황

연번	구분	조례 시행규칙상 감정평가 주제	반영 여부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5. 9. 7. 개정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6. 30. 개정
3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5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6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7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9	경기도교육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1995. 9. 18. 개정 시부터 감정평가업자로 명시
10	강원도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1	충청북도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2	충청남도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3	전라북도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4	전라남도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15	경상북도교육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6. 30. 개정
16	경상남도교육청	감정평가업자	반영	2016. 12. 22. 개정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정평가법인	미반영	-

주: 2019년 4월 말 기준

자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연안여객선 건조·구입 시 담보대출 제한 완화 필요

소 관 기 관 한국산업은행

조 치 기 관 한국산업은행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금융공공기관⁴³⁾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정부는 2013년부터 내항여객 운송사업자⁴⁴⁾가 연안여객선을 신규로 건조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으면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⁴⁵⁾에 대출금리의 일부(금리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利差)보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화⁴⁶⁾되어 있는 연안선박(연안여객선⁴⁷⁾ 및 연안화물선)을

43)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금리를 우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2017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44) ◎◎조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내항여객 운송사업자는 58개 업체이고, 그중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가 27개(47%)로 다수가 영세한 상황임

45) 중소기업·수협·농협·신한·부산·대구은행 등인데, 산업은행도 2017. 9. 29. 해양수산부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금융업무 이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음

46)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은 최대 30년이고,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7)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여객선은 여객 전용 여객선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구분됨

현대화하여 해상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해상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일반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 정부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금융업무 이행 협약’을 체결하여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인정하여 대출하고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 보증기금도 내항여객 운송업을 보증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금리를 우대(최대 $\Delta 0.5\%p$)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산업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에는 내항 여객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중소·중견 시설투자 우대자금’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신서비스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자금’ 등의 운용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적격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업은행은 2014년까지는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하여 대출해 오다가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선박⁴⁸⁾ 구입 자금(산업시설자금)을 대출하

면서 선박 담보 감정평가 전에 미리 대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지적받자,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대출 자체의 적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2014년 12월 대출을 위한 적격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아예 제외(담보 0원)하는 내용으로 「여신지침」(산업은행 내부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1. 26.과 2018. 3. 28.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적격 담보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산업은행은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등의 배상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선박우선폭권⁴⁹⁾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데도 외항여객선 및 내·외항 화물선 등 다른 선박은 담보로 인정하면서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박우선폭권이 적용되면 채권 우선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담보가치가 소멸한다는 이유로 적격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⁵⁰⁾하는 내용의 「여신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내항여객 운송사업자는 산업은행의 서비스산업 지원자금(시설자금)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⁵¹⁾ 등의 우대금리 상품을 통해 대출받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은행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에 부응하고 산업은행 상품인 서비스산업 지원자금의 운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신지침」을 개정하여 연안여객선

48) 내항여객 운송업의 여객 및 화물 겸용 연안여객선인 세월호를 의미함

49) 「상법」 제777조에 따라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손해 및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모든 선박에 적용됨

50) 일반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선박우선폭권을 이유로 연안여객선을 적격 담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51) 산업은행은 2017년 9월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2018년 12월까지 연안여객선을 제외하고 수협은행과 분담하여 연안화물선(유조선) 건조에 대해서만 총 5건(금액 280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음

을 담보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연안여객선을 적격 담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여신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회생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금 수납 규정 불합리

소 관 기 관 한국전력공사

조 치 기 관 한국전력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 등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 중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공사에서 2016년 이후(2016~2019년 3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표 1]과 같이 총 1,456개이다.

[표 1] 전기사용자 중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수

(단위: 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계
473	420	540	23	1,456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채무자회생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수도 등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회생채권⁵²⁾, 회생담보권⁵³⁾의 미변제를 이

52)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 참가의 비용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118조)

53)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및 제18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채권⁵⁴⁾ 및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전기요금채권⁵⁵⁾은 공익채권⁵⁶⁾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변제 및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할 경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여기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를 균형 있게 보장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전기요금 연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제79조 제1항 제4호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61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고객에게 전기를 계속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함(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54)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공급하여 생긴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55)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

56)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5호까지 규정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

공급하는 조건으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61조 제13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⁵⁷⁾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증 설정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모든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에 2016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1,456개 기업 중 회생절차개시 후 전기요금을 연체하지 않은 237개 기업에 대한 보증금 수납 여부 및 수납 사유 등을 확인한 결과, 215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은 반면, [표 2]와 같이 22개 중소기업(9.3%)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과거 체납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총 2억 9,651만여 원의 보증금을 수납하고 있었다.

[표 2] 회생절차개시 후 연체가 없는 기업 대상 보증금 수납 현황

(단위: 원)

관할 지사	고객명	보증금 수납 사유	보증금 수납액
전북본부 직할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30,000,000
북부산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35,000,000
구미	-	회생절차 폐지 예상고객	7,600,000
오산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15,000,000
남대구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1,800,000
서평택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9,000,000
경주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12,800,000
경산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600,000
경주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3,000,000
오산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2,501,950
영천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30,000,000

5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면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관할 지사	고객명	보증금 수납 사유	보증금 수납액
남대구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33,000,000
광진성동	-	요금납부 실적이 불량한 고객	13,000,000
광진성동	-	요금납부 실적이 불량한 고객	35,000,000
영천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6,000,000
파주	-	요금납부 실적이 불량한 고객	3,500,000
파주	-	요금납부 실적이 불량한 고객	18,014,590
광주(경기)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6,000,000
경주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15,000,000
영주	-	회생절차 폐지 예상고객	10,000,000
남대구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6,000,000
김해	-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고객	3,700,000
합계			296,516,540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일부 회생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전력공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후 전기요금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을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전기요금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의 조건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 설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본공급약관」 등 관련 약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정산업무위탁 회계법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

조 치 기 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은 사업비 등의 정산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의 계약규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위 기관은 계약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등에서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7. 12. 28.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시금액(2018년 기준 2억 1천만 원, 2019년 기준 2억 원) 미

만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을 개정할 바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그 개정 취지에 맞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전 부처 산하 118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사업비 정산 등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은 [별표] “입찰참가자격 실적 제한 현황”과 같이 사업비 등의 정산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8년 기준 2억 1천만 원, 2019년 기준 2억 원) 미만인 용역계약의 경쟁입찰공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수요부서에서 요청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등과 같이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위탁정산 수행실적이 없는 회계법인은 입찰참가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장은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에는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입찰참가자격 실적 제한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입찰명	공고일	추정가액	실적 요구 내용
과학기술 일자리진흥원	2018년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주)} 위탁정산기관	2018. 2. 2.	146,000,000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기관주요사업비 위탁정산 용역	2019. 2. 27.	109,292,40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16. 3. 8. ~2019. 3. 7.)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 기관과 위탁정산 협약을 체결, 수행한 실적
한국연구재단	2017년도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비 정산	2018. 3. 20.	30,000,000	사업비 집행점검 등과 유사한 용역 1건 이상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2차년도 사업비 정산 지원	2018. 7. 3.	30,000,000	사업비 집행점검 등과 유사한 용역 1건 이상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년 주요사업 연구비 위탁정산	2018. 8. 2. 2018. 8. 13. (재공고)	49,500,000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연구목적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연구비 정산 실적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실적이 있는 자
재료연구소	2018년도 주요사업 위탁정산 용역	2018. 11. 1.	40,000,000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과 위탁정산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정산 수행경험을 보유한 정산 전문기관
한국식품 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주요 자체사업 회계정산 용역	2018. 11. 1.	29,900,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혹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회계감사 경험이 있는 업체
합계			434,692,400	-

주: 2018년 2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자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별표] 기재 6개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세탁중개점 및 셀프빨래방에 대한 세탁업 규정 적용 불합리

소 관 기 관 보건복지부

조 치 기 관 보건복지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보건복지부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⁵⁸⁾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세탁업을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의무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교육 이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탁업”을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5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

록 되어 있다.

한편, 독신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일명 ‘세탁중개점’, ‘셀프빨래방’ 등 새로운 형태의 세탁 관련 업종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탁중개점의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세탁물을 모아 별도의 세탁공장에 전달하여 일괄 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⁵⁹⁾이며, 셀프 빨래방의 경우는 소비자가 소량의 빨래를 손쉽게 세탁할 수 있도록 일반 세제용 자동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⁶⁰⁾으로 [표 1]과 같이 기존 세탁업과는 영업형태 및 운영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1] 세탁업 및 관련 업종의 영업형태·운영방식 비교

구 분	세탁업	세탁중개점	셀프빨래방
이용객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
영업자 상주 여부	상주	상주	미상주
세탁서비스 직접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미제공
유기용제(드라이클리닝용) 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미사용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세탁소)’ 및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세탁업 창업가이드’ 내용 재구성

이에 보건복지부는 세탁중개점에 대해 “세탁물을 수집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위탁처리한 후 소비자에게 배달하여 주는 경우는 세탁업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질의회신(2004. 9. 8.)한 후 2008년 3월 발간한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에 질의회신 내용을 수록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셀프빨래방에 대하여 “세탁장소(빨래방)에 영업주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대신 손님이 직접 빨래기기를 조작·활용하는 형태이면서 일반적인 용제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세탁업으로 신고하여야만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회신(2016. 7. 27.)⁶¹⁾한 내용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수록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의미하므로 세탁업자가 영업소에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의 경우에는 세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세탁중개점을 세탁업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질의회신 내용을 2008년 3월 발간한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에는 수록하였으나, 최근(2014년 7월) 발간한 질의응답집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셀프빨래방이 세탁업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회신 내용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수록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충청남도 금산군은 2018. 6. 17. 중소기업 움부즈만을 통해 셀프빨래방을 세탁업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안내하는 방식만으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선이 해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이 세탁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등에 명시하여 규제의 객관성·공정성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세탁업 신고 건수 기준 상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내

5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세탁소)’(2013년 12월)

60)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세탁업 창업가이드’(2004년 11월)

61) 보건복지부는 2016. 7. 27.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민원회신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함

72개 시·군·구를 대상⁶²⁾으로 세탁중개점 및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 수리 및 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27개(37.5%) 시·군·구는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⁶³⁾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46개(63.9%) 시·군·구는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⁶⁴⁾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표 2] 세탁중개점 및 셀프빨래방에 대한 세탁업 신고 수리 현황

구 분	세탁업 신고 수리(비율)	세탁업 신고대상 제외(비율)
세탁중개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37.5%)	경기도 평택시 등 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62.5%)
셀프빨래방	경기도 고양시 등 46개 기초지방자치단체(63.9%)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36.1%)

자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관하 72개 시·군·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을 통한 세탁중개점 관련 질의회신의 안내를 중단한 2015. 1. 1. 이후에도 경기도 화성시 등 18개 시·군·구에서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셀프빨래방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를 통하여 관련 질의회신을 안내하였으나 2017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가 시·군·구에 배포된 2017년 5월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등 22개 시·군·구는 여전히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하였다.

더욱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등 7개 시·군·구는 [표 3]과 같이 세탁업 신고를 수리한 셀프빨래방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표 3]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관 할	업소명	과태료 부과일	부과사유	금 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 3. 14.	위생교육 미필	20만 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 7. 24.	위생교육 미필	20만 원
경기도 고양시	-	2018. 6. 20.	위생교육 미필	16만 원
경기도 김포시	-	2018. 2. 19.	위생교육 미필	20만 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7. 10. 11.	위생교육 미필	20만 원
부산광역시 서구	-	2015. 6. 19.	위생교육 미필	20만 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 2. 3.	위생교육 미필	16만 원

자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관하 72개 시·군·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세탁중개점 및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 수리 여부가 제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규제의 객관성·공정성 등이 저해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건복지부는 세탁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셀프빨래방과 세탁중개점이 세탁업으로 신고·관리되지 않도록 해당 업종들이 세탁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명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세탁중개점과 셀프빨래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으로 신고·관리되지 않도록 두 업종이 세탁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 명시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탁업 신고·관리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2) ‘셀프빨래방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관련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읍부즈만에 제출한 충청남도 금산군을 포함하여 총 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금산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63) 7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세탁중개점을 대상으로 세탁업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2001년 9월에도 세탁중개점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됨

64) 7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셀프빨래방을 대상으로 세탁업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1992년 12월에도 셀프빨래방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한 국산화 제품 시범 운용 등 기회 미제공

소 관 기 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조 치 기 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이하 “서부발전”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⁶⁵⁾(대표이사 I, 이하 “◆◆”라 한다)와 함께 구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발사업비 4억 7,200만 원(◆◆: 1억 4,000만 원, 서부발전: 1억 6,600만 원, 중소기업청: 1억 6,600만 원)을 들여 ‘발전설비 주터빈 및 회전체 진동감시시스템⁶⁶⁾ 국산화 개발’(이하 “진동감시시스템 개발”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및 구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에 따르면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은 투자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품의 판로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 발전기 3·4·5·6호기에 설치된 미국

★★사의 진동감시시스템인 ‘3300 시스템’을 국산화할 목적으로 2013. 6. 28. 구 중소기업청에 진동감시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후에 같은 해 8. 19. ◆◆를 개발 주관기관으로 추천하였고, 구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같은 해 10. 11. 진동감시시스템 개발을 수요조사 연구과제⁶⁷⁾로 최종 선정하여 서부발전에 통보하였다.

이후 서부발전은 ◆◆와 향후 개발과제가 성공 판정을 받고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 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익계약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0. 구 중소기업청에 위 계약 내용과 함께 개발 완료 후 3년간 총 1식(7억 5천만 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투자기업 확인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와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서부발전은 ◆◆와 2015년 4월(4. 13.~4. 28.) 태안발전본부 발전기 3호기에서 진동감시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을 하였으나 주터빈(TBN⁶⁸⁾) 진동 신호를 감지하는 성능 확인은 발전기가 가동 중인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우선 주터빈 펌프(BFPT⁶⁹⁾) 시험결과로 대체하되, 향후 발전기를 정지하였다가 재가동할 때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서부발전은 2015. 7. 30. 진동감시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같은 해 9. 30. 구 중소기업청에 보고한 후 같은 해 11. 13.에는 구 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진동감시시스템 총 2식을 2017. 10. 15.까지 구매할 계획임을 통지하면서 다만, 성능시험은 완료되었으나 6개월 이상 시범 운

65) 소음·진동 분야 계측 및 모니터링 장비 등 정밀제어계측기기 중소기업

66) 발전설비의 불시 정지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발전설비 회전체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설비이고, 일반적으로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라고 부름

67) 수요조사 연구과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등 투자기업이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사업임

68) TurBiNe의 약자임

69) Boiler Feedwater Pump TBN의 약자임

용이 필요하므로 구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투자기업 예상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는 주터빈 펌프(BFPT) 시험결과로 대체하였던 주터빈 성능시험을 2015. 12. 4. 서부발전에 요청하였고, 서부발전과 ◆◆가 같은 해 12. 7. 태안발전 본부 발전기 3호기에서 주터빈 성능시험을 실시하던 중, 기존 ★★사 제품과 ◆◆ 개발품을 동시에 운전하여 측정하기 위해 발전기 센서에 진동감시시스템을 연결하다가 경보 신호가 발생하자 성능시험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는 성능시험 시 발생한 문제점은 두 제품을 병렬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위차⁷⁰⁾에 의한 작은 문제라고 설명하였으나 서부발전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에 ◆◆는 2016년 초 개발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2016년 3분기부터는 서부발전에 조속한 기일 내에 주터빈 성능시험 기회 등을 다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서부발전도 주터빈 성능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 발전기 가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에 주터빈 성능시험과 시범 운용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서부발전은 2017년 초 ◆◆에는 발전기 3·4호기⁷¹⁾의 운영 일정상 2018년 12월 이후에나 성능시험 등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2017. 9. 29. 구 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진동감시시스템의 구매실적 제출을 요청하자 같은 해 10월(날짜 모름) 2018년에 추가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70) 전기장 또는 도체 내의 두 점 사이의 전압의 차

71) 서부발전은 발전기 5호기 및 6호기에서 진동감시시스템 성능시험이 가능한데도 발전처장 소속이 달라 본부장 등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발전기에서는 성능시험을 검토조차 하지 않음

검증한 후에 개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후 2019년 1월 감사원이 성능시험 기회 등 미부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성능시험 등을 위해 ◆◆와 협의하거나 성능시험 및 시범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발전기 가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서부발전은 ◆◆가 성능시험을 요청한 2017년부터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발전기 3·4·5·6호기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총 8차례 실시하면서 발전기를 정지한 후 재가동하여 진동감시시스템의 주터빈 성능시험을 할 수 있었고, 재가동 후 발전기별로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 동안 가동하였으므로 6개월 이상의 시범 운용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최근 3년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발전기 3·4·5·6호기의 계획예방정비공사 실적 및 가동 현황

구분	발전기별 정비 기간 및 가동 기간			
	정비 기간	가동 일자 (가동 기간)	정비 기간	가동 일자
3호기	2017. 10. 21.~ 2018. 2. 16.	2018. 2. 17.~ 2018. 10. 12.(7개월)	2018. 10. 13.~ 2018. 10. 21.	2018. 10. 22.~현재
4호기	2017. 5. 13.~ 2017. 5. 19.	2017. 5. 20.~ 2018. 8. 31.(15개월)	2018. 9. 1.~ 2018. 12. 9.	2018. 12. 10.~현재
5호기	2017. 5. 22.~ 2017. 5. 28.	2017. 5. 29.~ 2018. 4. 6.(10개월)	2018. 4. 7.~ 2018. 6. 4.	2018. 6. 5.~현재
6호기	2017. 2. 25.~ 2017. 4. 15.	2017. 4. 16.~ 2018. 6. 29.(12개월)	2018. 6. 30.~ 2018. 7. 8.	2018. 7. 9.~현재

자료: 서부발전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한 진동감시시스템의 추가 성능시험 및 시범 운용 기회가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제공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부발전은 단계적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범 운용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와 충분히 협의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은 주식회사 ◆◆에 발전기 주터 빈에 대해 성능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낙포석탄부두 항만시설 임대료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조 치 기 관 여수광양항만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수산청”이라 한다)은 2008. 1. 11. 현 ■■주식 회사(대표이사 J, 이하 “■■”이라 한다)⁷²⁾가 신청한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하역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9조 등에 따라 항만공사⁷³⁾ 시행허가를 하였고, 2010. 2. 10.에는 위 항만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은 위 부두 내 하역시설(레일 기초시설 2식·배수공·포장공)을 설치하여 2013. 8. 30. 준공한 후 여수수산청에 귀속하였고, 여수수산청은 같은 해 10. 14. 위 귀속시설 및 다른 항만시설(야적장·안벽·돌핀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를 위 부두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매년 총사업비(8,154,431,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 8. 19. 설립된 이후, 2014. 7. 7. 여수수산청 으로부터 ■■이 설치하여 여수수산청에 귀속된 하역시설을 포함한 낙포석탄부

72) 당초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컨소시엄이었으나, 2009년 10월 ■■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이후 ■■주식회사는 회사명을 변경하여 현재는 ■■임

73)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하역·보관·이송·반출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1,472억 600만 원), ‘여천일반부두 내 기타광 석부두의 하역시설 및 보조시설 설치공사’(87억 4,800만 원)로 ■■이 총사업비 1,559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귀속항만시설(하역기 레일 기초시설 2식·배수공·포장공)과 비귀속항만시설(하역기 3기·반출시설·보관시설·운영 건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두 내 부지 및 항만시설의 관리권⁷⁴⁾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같은 해 7. 9. ■■

과 임대료는 추후에 협의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5. 3. 6. 임대수익 확보를 위해 ‘낙포석탄부두 임대료 산정 및 부과 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용하는 귀속시설과 다른 항만 시설(야적장·안벽·돌핀시설)에 대하여 여수수산청이 총사업비(8,154,431,000원) 보전을 위해 산정한 사용료(연평균 5억 5,000만 원) 외에 연평균 6억 7,500만여 원의 임대료⁷⁵⁾를 더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에 추가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그런데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 설립 당시 해당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비관리청)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구 「항만법」(2003. 10. 1.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항만법」 제17조 및 제27조와 구 「항만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제21조 등에 따르면 비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무상사용 기간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과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74) 2013. 1. 18. 여수수산청과 낙포석탄부두를 포함한 여수 광양항 부두 및 시설에 대해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30. ■■이 낙포석탄부두 내 하역시설 등을 준공하자, 위 시설도 무상으로 대부분이 2019. 5. 15. 감사 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75) 임대료 부과액은 2015년 155,707,710원, 2016년 613,596,597원, 2017년 832,083,989원, 2018년 1,099,469,238원 등 계 2,700,857,534원이나 단수조정 후 실제 징수한 금액은 2,700,857,000원임

이를 때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자의 귀속시설 및 다른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항만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5. 3. 18. ■■에 추가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추가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이 임대료 산정에 대한 불만⁷⁶⁾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8. 4. 20.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은 미납 임대료 3,106,514,900원⁷⁷⁾을 납부하면서 2018. 8. 13. 위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에 여수수산청이 총사업비 보전을 위해 산정한 사용료 이외에 임대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율촌 등 4개 법무법인⁷⁸⁾에 ■■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고, 정부법무공단과 3개의 법무법인⁷⁹⁾으로부터 “■■은 여수수산청에서 산정한 사용료를

76) ■■은 2016. 12. 21. 구 「항만법」 등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로 임대료를 재산정해 줄 것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요청하였음

77) ■■은 임대료 2,700,857,000원과 연체료 135,572,600원, 부가세 270,085,300원 등 합계 3,106,514,900원 전액을 2018. 4. 27.부터 같은 해 9. 18.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음

78) 2018년 11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자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에 법률자문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 자문료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어 법무법인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에 추가로 법률자문을 하였음

79) 법무법인 ■■■은 공사 설립 당시 ■■이 해당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결정하는 주체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이므로 위 공사가 산정한 임대료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부법무공단과 ▲▲ 등 3개 법무법인은 「항만공사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기준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고, 무상사용이 임대차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서야 2019. 4. 9. 뒤늦게 ■■과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에 임대료 3,106,514,900원을 반환하였다.

그 결과,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추가 임대료 납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소송 대응 및 임대료 반환 과정에서 행정력도 낭비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귀속시설의 사업비 보전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 내용에 대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9. 4. 12.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임대료 3,106,514,900원을 반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귀속시설의 사업비 보전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만 받으면 구 「항만법」 제17조 등에 따라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사용권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자동차검사 관련 사전 안내문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 치 기 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의무나 검사 기일을 알지 못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⁸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소의 위치·검사 기일 등을 우편과 모바일 등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 공단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 정비사업자⁸¹⁾(이하 “민간 검사소”라 한다)가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기준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은 2007년 이전에는 환경부, 위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발송하였으나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이 여러 기관에서 발

8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1만 원을 더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81) 민간 자동차 정비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말함

송되어 수검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이유로 2007년부터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위 공단에서 통합하여 발송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로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은 우편료 인상으로 인한 사전 안내문 발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 공단에서 2018. 3. 6.부터 카카오톡에 가입한 자동차검사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있는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에 자동차검사 대상자에게 모바일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면 자동차검사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쳐 사전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⁸²⁾

한편,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현황을 살펴보면 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는 101개, 민간 검사소 수는 1,812개로 민간 검사소가 약 18배가량 많고,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 진로(進路)⁸³⁾ 수도 위 공단이 198개, 민간이 1,812개로 민간 검사소의 진로 수가 약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8년 기준 위 공단의 자동차검사 실적은 3,132,133대로 민간의 8,369,182대보다는 적었으나, 검사진로당 평균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공단 검사소(15,819대)가 민간 검사소(4,619대)에 비해 약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 공단은 이와 같이 공단 검사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토요일 예약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예약제를 평일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공단 검사소나 민간 검사소 중 어느 곳에서 받든

지 그 효력이 동일하고, 위 공단에서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며, 현재 공단 검사소에 상대적으로 검사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 공단은 사전 안내문에서 공단 검사소뿐만 아니라 민간 검사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공단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에 검사소를 안내하면서 [그림 1]과 같이 공단 검사소는 사전 안내문 앞면 전체를 활용하여 약도·주소·주요 도로에서 검사소까지 거리·소요시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반면, 민간 검사소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문 뒷면에 목록 형식으로 업체명·전화번호를 나열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소재지도 도로명만 기재하고 주소조차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1] 사전 안내문의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안내 비교

지정정비사업자			
지역	지정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검사자동차종합검사	반송로	051-525-3138
	금정모터스카	중앙대로	051-518-2525
	남산모터스카	중앙대로	051-513-4417
	대한원비검합사하	공단사로	051-529-6006
	동창원비하	공단사로	051-529-9912
	문화자동차합비	체육공원로	051-518-0005
	송파동원합비하	공단사로	051-521-7744
	한스비하	수원로	051-512-1133
	국제자동차합비하	무인사로	051-633-6400
	남부산모터스카	신선로	051-611-0600
경기	남부자동차합비하	용호로	051-625-3200
	부경도럭모터스	우암로	051-714-1915
	와이아이치모터스엔오트파츠하	신선로	051-636-5587
	우성자동차합비공합하	신선신선로	051-625-7005
	포시즈모터스카	우암로	051-637-9900
	현대대기(이)남구 정비서비스하	신선로	051-624-2121
	덕무자동차합비하	월도대로	051-761-4780
	한신자동차합비하	월도대로	051-866-5405
	한신자동차합비하	월도대로	051-866-5405
	한신자동차합비하	월도대로	051-866-5405

82) 당초 2017년 9월에 시범 서비스를 하면서는 우편 사전 안내문을 자동차검사 기간 시작 5일 전에 1차로 발송한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공단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사유로 2019. 6. 13.부터는 자동차검사 대상자가 먼저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사전 안내문을 열람하면 추가로 우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동차검사 대상자에게는 여전히 1:2차로 우편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83) 자동차검사소에서 각종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간 또는 검사라인을 의미함

자료: 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모바일 사전 안내문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공단 검사소는 ‘검사소

찾기' 메뉴를 선택하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사소의 위치·업무 시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었으나, 민간 검사소는 모바일 사전 안내문의 '지역별 검사소 보기' 메뉴에서 '지정정비사업자(전국)'를 선택한 후 원하는 시·도를 선택하면 각 시·도의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종합검사소 목록 안내 화면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기남부 4개 지역은 시·도 선택대상에서 제외⁸⁴⁾되어 해당 지역의 민간 검사소는 안내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 모바일 사전 안내문의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안내 비교



<공단 검사소 안내>

종합검사소시행업체

1.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51개 정비업체입니다.
가까운 자동차 검사 지정업체를 찾아 편리한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	종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강남구	소형정비	서울자동차서비스	서울 강남구 선릉로93길 46	원광자
강동구	소형정비	동신자동차(주)	서울 강동구 성내로 92	원광숙
강동구	소형정비	르노삼성자동차지정정비센터(강동점비)	서울 강동구 현호대로 1189	서희원
강북구	중형정비	일신자동차공업사(주)	서울 강북구 도화로 22	이계진
강북구	중형정비	한성자동차(주)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3	손중석
강서구	중형정비	강서현대서비스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223	이연희
강서구	중형정비	미래자동차종합공업사(주)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7	최병현

<민간 검사소 안내>

자료: 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소 목록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어 민간 검사소 중 정기검사소⁸⁵⁾를 찾으려면 조합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등 민간 검사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위 공단이 조합 등과 협의 없이 민간 검사소 안내 방법

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과 관련하여 2013. 7. 4. 전국 ▲▲조합 연합회에서는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위 공단이 사전 안내문 약도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지 인근의 민간 검사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단 검사소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였고, 2015. 6. 2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를 균등하게 안내하는 방안을 2015년 12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위 공단은 2015. 7. 24. '자동차검사제도 운영 관련 권고사항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하여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민간에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공단과 동일하게 민간 검사소 안내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한 후,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조합과 협의하지 않은 채로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 검사소 위주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22.~5. 15.) 중 전국 17개 시·도 조합⁸⁶⁾에 민간 검사소와 공단 검사소를 균등하게 안내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조합 모두 비용 부담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 공단과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관련 사전 안내문에 민간 검

84) 울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은 조합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민간 검사소 목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 공단은 해당 지역을 시·도 선택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음

85)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고, 그 외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86)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조합이 없어 해당 지역의 민간 검사소는 충청남도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조합 외에 경기북부 ▲▲조합이 별도로 있음

사소의 상세 약도를 추가하는 등 민간 검사소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비용 분담 등에 관하여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수검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검사소를 쉽게 찾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문에 공단에 서 운영하는 검사소 외에 수검자 거주지 인근의 민간 검사소도 약도를 첨부하여 자세히 안내하는 등 ▲▲조합 등과 협의하여 민간 검사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